

남 동 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1589호
2021년 2월 4일
목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	고 제 2 4 2 호	공유재산 매각 지명경쟁입찰 공고		2
○ 공	고 제 2 5 5 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7
○ 공	고 제 2 6 3 호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		11
○ 공	고 제 2 6 6 호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남동 노인복지관)사업 실시 계획 인가 공고·열람		31
○ 공	고 제 2 6 8 호	2021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고지서 공시송달		34
○ 공	고 제 2 7 9 호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53
○ 공	고 제 2 8 7 호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에 따른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55
○ 의 회 사 무 공	국 제 1 0 호	「남동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및 의견수렴		57
○ 의 회 사 무 공	국 제 1 1 호	「남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70
○ 의 회 사 무 공	국 제 1 2 호	「남동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81
○ 의 회 사 무 공	국 제 1 3 호	「남동구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92
○ 의 회 사 무 공	국 제 1 4 호	「남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107
○ 의 회 사 무 공	국 제 1 5 호	『남동구의회 표창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128
○ 의 회 사 무 공	국 제 1 6 호	『남동구의회 표창 규정 폐지규정안』 입법예고		152
○ 의 회 사 무 공	국 제 1 7 호	「남동구 관광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160
○ 보 건 소 공 고 재	1 1 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174
○ 보 건 소 공 고 제	1 2 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공고		175

회 람								
----------------	--	--	--	--	--	--	--	--

발행 : 남동구

편집 : 대변인실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242호

공유재산 매각 지명경쟁입찰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유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1년 2월 1일

남 동 구 청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입찰건명 : 공유재산(토지) 매각 지명경쟁입찰
 나. 매각재산의 표시

대상토지	지목	면적(㎡)		매각예정액(원)	입찰참가대상자	비고
		지적	매각			
운연동 259-7	임야	9	9	12,876,000	연접토지주 김○철 한○용	

2. 입찰 및 개찰 일시·장소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1. 2. 1.(월) 10:00 ~ 2021. 2. 15.(월) 16:00
전자입찰서 제출장소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http://www.onbid.co.kr)
현 장 설 명	별도 설명회 없음
개 찰 일 시	2021. 2. 16.(화) 10:00 이후
개 찰 장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계 약 기 한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

※ 온비드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함.

3. 입찰 참가자격

- 가. 지명경쟁입찰 참가대상 통지를 받은 자로 매각대상 구유지 인접 사유토지 소유자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입찰 참가 자격제한)의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참가자 자격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라. 「온비드」에 이용자(회원) 등록을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전자입찰에 사용 가능한 것)로 「온비드」에 등록을 마친 자

4. 현장설명 안내

- 가. 본 매각재산에 대하여 별도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현황 상태로 매각하는 것으로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관련 공부를 열람하시고, 현장을 사전 답사한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 나. 입찰등록을 필한 자는 관련 공부의 열람과 현장을 확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응찰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5. 입찰 방법

- 가. 본 입찰은 지명경쟁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이하 「온비드」라 합니다.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 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온비드 홈페이지(<http://www.onbid.co.kr>)」에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전자입찰에 사용가능한 것)를 등록 후 「온비드」의 인터넷 전자입찰시스템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 다. 「온비드 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6. 입찰서 제출

- 가.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전자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나.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다. 입찰시작시간 및 입찰마감시간 등 입찰관련 시간은 온비드 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라. 본 입찰에는 2인 이상의 공동입찰 참가가 불가능하고,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 불가능하며, 동일인이 1회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2회 이상 유효한 입찰서가 제출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마. 입찰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7. 입찰 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환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의 10/100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계좌는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부여된 은행계좌에 보증금 전액을 한번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 입찰결과 무효 또는 유찰된 경우 입찰보증금은 응찰자가 지정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며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전액 우리구에 귀속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입찰보증금은 전액 계약보증금으로 전환됩니다.

8. 입찰의 성립 및 낙찰자 결정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따른 매각 예정가격 이상 최고금액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나. 한 가격의 최고금액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에 설치된 무작위 추첨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입찰결과는 한국자산관리공사(<http://www.onbid.co.kr>) 전자자산처분시스템(입찰결과-공공기관입찰결과 또는 나의 온비드-입찰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낙찰 여부 확인은 입찰자 본인의 책임사항입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의 규정에 의

하며, 「온비드 시스템」상의 회원 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 준수규칙에 위배된 입찰의 경우

나. 동일인이 2회 이상 유효한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다.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입찰보증금 금액납부가 입찰금액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10. 계약체결

가. 계약체결기간 :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나. 계약체결장소 : 남동구 재무과

다. 구비서류

▶ 신분증, 인감(법인은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 증명서,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대리인의 경우 : 위임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인감·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11. 매각대금 납부 방법

가. 계약금 : 입찰보증금을 계약금으로 전환

나. 잔 금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우리구가 발행하는 소정의 납부고지서에 의거 전액 납부

다. 납부기한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해지되고, 계약금은 우리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전자입찰에 따른 유의사항

가. 입찰 및 계약에 따른 모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나. 재산활용에 관한 제반 법규의 제한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관련 제반 법규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 후 응찰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다른 법령이나 행정상 제반사항의 미비로 인하여 재산 취득에 제한을 받거나 매각재산 취득 후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우리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라. 「온비드 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이 어려운 경우 입찰 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상의 (공매공고 - 연기공고 - 취소 공고) 게재에 의할 수 있습니다.

마. 매각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 완납 후에 가능하며, 본 재산의 명도에 필요한 비용과 제반 수속은 매수자가 부담·처리하여야 합니다.

바. 본 매각대상 재산에 대한 각종 공부와의 불일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및 신고 등의 행정절차, 주변이웃과의 분쟁사항, 지장물 등의 제거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문제는 매수자의 부담과 책임으로 처리하는 조건으로 매각합니다.

사.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포함)」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동법시행령 포함)」에 의합니다.

13. 기타 문의처

가.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 홈페이지 : <http://www.onbid.co.kr>

▶ 전화번호 : 「온비드 콜센터」 1588-5321

나. 기타 매각재산에 관한 사항 : 남동구 재무과(☎ 032-453-2273)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255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등)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 요청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운행정지 명령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일

남 동 구 청 장

1. 처 분 명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2. 공고기간 : 2021. 2. 1 ~ 2021. 2. 16(15일간)
3. 공고대상 : 별 첨
4. 공고방법 : 시·군구 홈페이지(또는 게시판)
5. 공고내용

가.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의 요청에 의한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사실을 공고하니 자동차 사용자(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자동차 사용자라 한다) 및 실제운행자는 운행정지 명령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운행정지 명령 해제 요청을 하신 후에 자동차를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 : 자동차 사용자와 실제운행자가 다르면서 자동차관리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 위반 등(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세 체납, 과속·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등 의지속)을 하고,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의 관계 및 그 밖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운행정지 명령에 해당 된다고 판단되는 자동차

나.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2조 2의2호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6. 문의처 :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1)

운행정지 자동차 현황

연번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소유자명	사용본거지주소	등록일
1	370모4764	레인지로버 벨라 D240	케이비캐피탈(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11, 9층(구월동, 인천지점)	2021.01.29
2	46호7821	스파크 1.0	신한카드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11(구월동)	2021.01.27
3	59조9396	캐딜락 CT6	케이비캐피탈(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11, 9층(구월동)	2021.01.26
4	33거8975	캐딜락 XT5	케이비캐피탈(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11, 9층(구월동)	2021.01.26
5	45가7594	마티즈	이*용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천로 11,	2021.01.26
6	07마0153	A4 35 TDI quattro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79(구월동)	2021.01.26
7	18저1817	BMW 520d	김*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하촌서로47번길 20-1,	2021.01.26
8	62버5428	스포티지	최*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5,	2021.01.22
9	398버1220	911 카레라 4 GTS 카브리올레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11, 9층(구월동, 인천지점)	2021.01.20
10	53호4697	모하비	신한카드(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11(구월동)	2021.01.19
11	102거8165	트랙스 1.4	최*범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899번길 8	2021.01.18
12	53호6843	쏘나타(SONATA)	신한카드(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11(구월동)	2021.01.18
13	09보7383	K5	KIM DANISLAV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205번길 12-6, 301호(논현동)	2021.01.18
14	서울41마9876	쏘나타투2.0	이*희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306-1,	2021.01.15
15	48라8184	그랜저XG	반*진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194-17,	2021.01.15
16	21호9017	투싼(TUCSON)	신한카드(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11(구월동)	2021.01.15
17	40부7384	렉서스 ES300h	신한카드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11(구월동)	2021.01.14
18	128허5832	K3	신한카드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11(구월동)	2021.01.14
19	150하7757	K7	신한카드(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11(구월동, 인천지점)	2021.01.14
20	인천3다5130	로얄프린스	김*배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아산로128번길 22,	2021.01.13

제1589호

남동구 구보

2021. 2. 4. 목요일

21	66도1111	BMW 520d xDrive	메리츠캐피탈(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42-1, 301호(구월동, 오성빌딩)	2021.01.13
22	01호0468	G90	신한카드(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11(구월동)	2021.01.08
23	32고0977	티볼리	이*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497번길 69,	2021.01.04
24	09가6321	마세라티 르반떼 디젤	메리츠캐피탈(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42-1, 301호(구월동, 오성빌딩)	2021.01.04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263호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내 도로 등에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관중인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규정에 의거하여 강제 처분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자전거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자전거를 찾아가는 등 권리행사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2일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명 :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
2. 공고기간 : 2021. 2. 2. ~ 2. 15.(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처분대상 : 무단방치 자전거 89대(붙임 참조)
4. 보관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386-8번지
5. 처리방법 : 공고 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도 찾아가지 아니하면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처리
가.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며, 공고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매각대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
나. 기증,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활용
6. 열람대장 : “ 별 첨 ”
7. 문 의 : 남동구청 건설과 도로관리팀(☎032-453-56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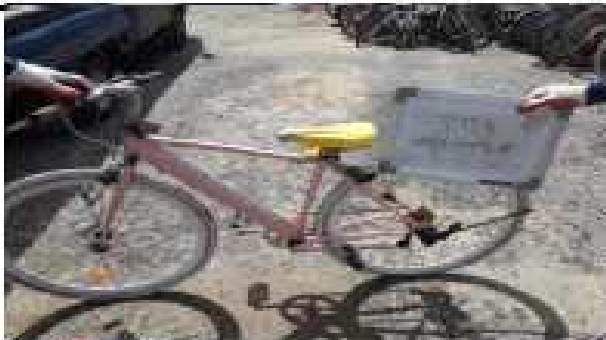
무단방치 자전거 관리대장(2020. 9.)

001		발견일시	2020. 7. 30.
		발견장소	인천시청역 1번출구
		종 류	성인용
		색상/특징	은색
		제조회사명	중원테크
		이동보관일	2020. 9. 3.
		보관장소	각함장(도림동 388-8)
002		발견일시	2020. 7. 30.
		발견장소	인천시청역 1번출구
		종 류	성인용
		색상/특징	빨간색
		제조회사명	나누리
		이동보관일	2020. 9. 3.
		보관장소	각함장(도림동 388-8)
003		발견일시	2020. 7. 30.
		발견장소	인천시청역 1번출구
		종 류	성인용
		색상/특징	검정색
		제조회사명	식별불가
		이동보관일	2020. 9. 3.
		보관장소	각함장(도림동 388-8)
004		발견일시	2020. 7. 30.
		발견장소	인천시청역 1번출구
		종 류	성인용
		색상/특징	은색
		제조회사명	삼천리
		이동보관일	2020. 9. 3.
		보관장소	각함장(도림동 388-8)
005		발견일시	2020. 7. 30.
		발견장소	인천시청역 1번출구
		종 류	성인용
		색상/특징	은색
		제조회사명	삼천리
		이동보관일	2020. 9. 3.
		보관장소	각함장(도림동 388-8)

무단방치 자전거 관리대장(2020. 9.)

006		발견일시	2020. 7. 30.
		발견장소	간석오거리역 4번출구
		종 류	성인용
		색상/특징	은색
		제조회사명	알론스포츠
		이동보관일	2020. 9. 3.
		보관장소	각함장(도림동 386-8)
		처리결과	
007		발견일시	2020. 7. 30.
		발견장소	간석오거리역 4번출구
		종 류	성인용
		색상/특징	빨간색
		제조회사명	삼천리
		이동보관일	2020. 9. 3.
		보관장소	각함장(도림동 386-8)
		처리결과	
008		발견일시	2020. 7. 30.
		발견장소	간석오거리역 4번출구
		종 류	성인용
		색상/특징	검정색
		제조회사명	삼천리
		이동보관일	2020. 9. 3.
		보관장소	각함장(도림동 386-8)
		처리결과	
009		발견일시	2020. 7. 30.
		발견장소	간석오거리역 4번출구
		종 류	성인용
		색상/특징	은색
		제조회사명	알론스포츠
		이동보관일	2020. 9. 3.
		보관장소	각함장(도림동 386-8)
		처리결과	
010		발견일시	2020. 7. 30.
		발견장소	간석오거리역 4번출구
		종 류	성인용
		색상/특징	흰색
		제조회사명	스마트
		이동보관일	2020. 9. 3.
		보관장소	각함장(도림동 386-8)
		처리결과	

무단방치 자전거 관리대장(2020. 9.)

011		발견일시	2020. 7. 30.
		발견장소	간석오거리역 4번출구
		종 류	성인용
		색상/특징	분홍색
		제조회사명	실천리
		이동보관일	2020. 8. 3.
		보관장소	적함장(도림동 386-8)
		처리결과	
012		발견일시	2020. 7. 30.
		발견장소	간석오거리역 4번출구
		종 류	성인용
		색상/특징	검정색
		제조회사명	실천리
		이동보관일	2020. 8. 3.
		보관장소	적함장(도림동 386-8)
		처리결과	
013		발견일시	2020. 7. 30.
		발견장소	간석오거리역 4번출구
		종 류	성인용
		색상/특징	흰색
		제조회사명	스마트
		이동보관일	2020. 8. 3.
		보관장소	적함장(도림동 386-8)
		처리결과	
014		발견일시	2020. 7. 30.
		발견장소	간석오거리역 4번출구
		종 류	성인용
		색상/특징	분홍색
		제조회사명	실천리
		이동보관일	2020. 8. 3.
		보관장소	적함장(도림동 386-8)
		처리결과	
015		발견일시	2020. 7. 30.
		발견장소	간석오거리역 4번출구
		종 류	성인용
		색상/특징	검정색
		제조회사명	아메리칸이글
		이동보관일	2020. 8. 3.
		보관장소	적함장(도림동 386-8)
		처리결과	

무단방치 자전거 관리대장(2020. 9.)

Q16		발견일시	2020. 7. 30.
		발견장소	간석오거리역 4번출구
		종 류	성인용
		색상/특징	분홍색
		제조회사명	삼천리
		이동보관일	2020. 9. 3.
		보관장소	적환장(도림동 388-8)
Q17		발견일시	2020. 7. 30.
		발견장소	간석오거리역 4번출구
		종 류	성인용
		색상/특징	갈색
		제조회사명	드론
		이동보관일	2020. 9. 3.
		보관장소	적환장(도림동 388-8)
Q18		발견일시	2020. 7. 30.
		발견장소	간석오거리역 4번출구
		종 류	성인용
		색상/특징	파란색
		제조회사명	삼천리
		이동보관일	2020. 9. 3.
		보관장소	적환장(도림동 388-8)
Q19		발견일시	2020. 7. 30.
		발견장소	간석오거리역 4번출구
		종 류	성인용
		색상/특징	흰색
		제조회사명	알론스포츠
		이동보관일	2020. 9. 3.
		보관장소	적환장(도림동 388-8)

무단방치 자전거 관리대장(2020. 10.)

001		발견일시	2020. 8. 21.
		발견장소	운연역 1번출구
		종 류	아동용
		색상/특징	분홍색
		제조회사명	삼천리
		이동보관일	2020. 10. 8.
		보관장소	적함장(도림동 886-8)
		처리결과	
002		발견일시	2020. 8. 21.
		발견장소	운연역 1번출구
		종 류	성인용
		색상/특징	흰색
		제조회사명	삼천리
		이동보관일	2020. 10. 8.
		보관장소	적함장(도림동 886-8)
		처리결과	
003		발견일시	2020. 8. 21.
		발견장소	운연역 1번출구
		종 류	성인용
		색상/특징	검은색
		제조회사명	삼천리
		이동보관일	2020. 10. 8.
		보관장소	적함장(도림동 886-8)
		처리결과	
004		발견일시	2020. 8. 21.
		발견장소	운연역 1번출구
		종 류	성인용
		색상/특징	흰색
		제조회사명	알몬스포츠
		이동보관일	2020. 10. 8.
		보관장소	적함장(도림동 886-8)
		처리결과	
006		발견일시	2020. 8. 21.
		발견장소	운연역 1번출구
		종 류	성인용
		색상/특징	은색
		제조회사명	삼천리
		이동보관일	2020. 10. 8.
		보관장소	적함장(도림동 886-8)
		처리결과	

무단방치 자전거 관리대장(2020. 10.)

006		발견일시	2020. 9. 21.
		발견장소	운연역 1번출구
		종 류	성인용
		색상/특징	은색
		제조회사명	삼천리
		이동보관일	2020. 10. 8.
		보관장소	적함장(도림동 388-8)
		처리결과	
007		발견일시	2020. 9. 21.
		발견장소	운연역 1번출구
		종 류	성인용
		색상/특징	은색
		제조회사명	알론스포츠
		이동보관일	2020. 10. 8.
		보관장소	적함장(도림동 388-8)
		처리결과	
008		발견일시	2020. 9. 21.
		발견장소	운연역 1번출구
		종 류	성인용
		색상/특징	은색
		제조회사명	알론스포츠
		이동보관일	2020. 10. 8.
		보관장소	적함장(도림동 388-8)
		처리결과	
009		발견일시	2020. 9. 21.
		발견장소	운연역 1번출구
		종 류	성인용
		색상/특징	은색
		제조회사명	삼천리
		이동보관일	2020. 10. 8.
		보관장소	적함장(도림동 388-8)
		처리결과	
010		발견일시	2020. 9. 21.
		발견장소	운연역 1번출구
		종 류	아동용
		색상/특징	분홍색
		제조회사명	지오닉스
		이동보관일	2020. 10. 8.
		보관장소	적함장(도림동 388-8)
		처리결과	

무단방치 자전거 관리대장(2020. 10.)

011		발견일시	2020. 9. 21.
		발견장소	운연역 1번출구
		종 류	성인용
		색상/특징	검은색
		제조회사명	삼천리
		이동보관일	2020. 10. 8.
		보관장소	적함장(도림동 386-8)
012		발견일시	2020. 9. 21.
		발견장소	인천대공원역 1번출구
		종 류	성인용
		색상/특징	흰색
		제조회사명	삼천리
		이동보관일	2020. 10. 13.
		보관장소	적함장(도림동 386-8)
013		발견일시	2020. 9. 21.
		발견장소	인천대공원역 1번출구
		종 류	성인용
		색상/특징	빨간색
		제조회사명	삼천리
		이동보관일	2020. 10. 13.
		보관장소	적함장(도림동 386-8)
014		발견일시	2020. 9. 21.
		발견장소	인천대공원역 1번출구
		종 류	성인용
		색상/특징	은색
		제조회사명	삼천리
		이동보관일	2020. 10. 13.
		보관장소	적함장(도림동 386-8)
016		발견일시	2020. 9. 21.
		발견장소	인천대공원역 1번출구
		종 류	성인용
		색상/특징	하늘색
		제조회사명	알론스포츠
		이동보관일	2020. 10. 13.
		보관장소	적함장(도림동 386-8)
		처리결과	

무단방치 자전거 관리대장(2020. 10.)

016		발견일시	2020. 9. 21.
		발견장소	인천대공원역 1번출구
		종 류	성인용
		색상/특징	검은색
		제조회사명	알론스포츠
		이동보관일	2020. 10. 13.
		보관장소	적함장(도림동 386-8)
		처리결과	
017		발견일시	2020. 9. 21.
		발견장소	인천대공원역 2번출구
		종 류	아동용
		색상/특징	분홍색
		제조회사명	삼천리
		이동보관일	2020. 10. 13.
		보관장소	적함장(도림동 386-8)
		처리결과	
018		발견일시	2020. 9. 21.
		발견장소	인천대공원역 2번출구
		종 류	성인용
		색상/특징	빨간색
		제조회사명	삼천리
		이동보관일	2020. 10. 13.
		보관장소	적함장(도림동 386-8)
		처리결과	
019		발견일시	2020. 9. 21.
		발견장소	남동구청역 1번출구
		종 류	성인용
		색상/특징	흰색
		제조회사명	삼천리
		이동보관일	2020. 10. 14.
		보관장소	적함장(도림동 386-8)
		처리결과	
020		발견일시	2020. 9. 21.
		발견장소	남동구청역 1번출구
		종 류	아동용
		색상/특징	파란색
		제조회사명	삼천리
		이동보관일	2020. 10. 14.
		보관장소	적함장(도림동 386-8)
		처리결과	

무단방치 자전거 관리대장(2020. 10.)

021		발견일시	2020. 9. 21.
		발견장소	남동구청역 1번출구
		종 류	성인용
		색상/특징	흰색
		제조회사명	삼천리
		이동보관일	2020. 10. 14.
		보관장소	적현장(도림동 388-8)
		처리결과	
022		발견일시	2020. 9. 21.
		발견장소	남동구청역 1번출구
		종 류	성인용
		색상/특징	검은색
		제조회사명	삼천리
		이동보관일	2020. 10. 14.
		보관장소	적현장(도림동 388-8)
		처리결과	
023		발견일시	2020. 9. 21.
		발견장소	남동구청역 1번출구
		종 류	성인용
		색상/특징	은색
		제조회사명	스마트
		이동보관일	2020. 10. 14.
		보관장소	적현장(도림동 388-8)
		처리결과	
024		발견일시	2020. 9. 21.
		발견장소	남동구청역 1번출구
		종 류	성인용
		색상/특징	검은색
		제조회사명	스마트
		이동보관일	2020. 10. 14.
		보관장소	적현장(도림동 388-8)
		처리결과	
026		발견일시	2020. 9. 21.
		발견장소	남동구청역 2번출구
		종 류	성인용
		색상/특징	검은색
		제조회사명	삼천리
		이동보관일	2020. 10. 14.
		보관장소	적현장(도림동 388-8)
		처리결과	

무단방치 자전거 관리대장(2020. 10.)

026		발견일시	2020. 9. 21.
		발견장소	남동구청역 2번출구
		종 류	성인용
		색상/특징	은색
		제조회사명	삼천리
		이동보관일	2020. 10. 14.
		보관장소	적항창(도림동 386-8)
027		발견일시	2020. 9. 21.
		발견장소	남동구청역 2번출구
		종 류	성인용
		색상/특징	검은색
		제조회사명	지오닉스
		이동보관일	2020. 10. 14.
		보관장소	적항창(도림동 386-8)
028		발견일시	2020. 9. 21.
		발견장소	남동구청역 4번출구
		종 류	성인용
		색상/특징	검은색
		제조회사명	알론스포츠
		이동보관일	2020. 10. 14.
		보관장소	적항창(도림동 386-8)
029		발견일시	2020. 9. 21.
		발견장소	남동구청역 4번출구
		종 류	성인용
		색상/특징	은색
		제조회사명	삼천리
		이동보관일	2020. 10. 14.
		보관장소	적항창(도림동 386-8)
030		발견일시	2020. 9. 21.
		발견장소	남동구청역 4번출구
		종 류	성인용
		색상/특징	은색
		제조회사명	삼천리
		이동보관일	2020. 10. 14.
		보관장소	적항창(도림동 386-8)

무단방치 자전거 관리대장(2020. 10.)

031		발견일시	2020. 9. 21.
		발견장소	남동구청역 4번출구
		종 류	아동용
		색상/특징	분홍색
		제조회사명	속언바이크
		이동보관일	2020. 10. 14.
		보관장소	각환장(도림동 386-8)
		처리결과	
032		발견일시	2020. 9. 21.
		발견장소	남동구청역 4번출구
		종 류	성인용
		색상/특징	은색
		제조회사명	지오닉스
		이동보관일	2020. 10. 14.
		보관장소	각환장(도림동 386-8)
		처리결과	
033		발견일시	2020. 9. 21.
		발견장소	만수역 2번출구
		종 류	성인용
		색상/특징	흰색
		제조회사명	삼천리
		이동보관일	2020. 10. 14.
		보관장소	각환장(도림동 386-8)
		처리결과	
034		발견일시	2020. 9. 21.
		발견장소	만수역 4번출구
		종 류	성인용
		색상/특징	빨간색
		제조회사명	삼천리
		이동보관일	2020. 10. 14.
		보관장소	각환장(도림동 386-8)
		처리결과	
035		발견일시	2020. 9. 21.
		발견장소	만수역 4번출구
		종 류	성인용
		색상/특징	흰색
		제조회사명	삼천리
		이동보관일	2020. 10. 14.
		보관장소	각환장(도림동 386-8)
		처리결과	

무단방치 자전거 관리대장(2020. 10.)

036		발견일시	2020. 9. 21.
		발견장소	만수역 4번출구
		종 류	성인용
		색상/특징	흰색
		제조회사명	삼천리
		이동보관일	2020. 10. 14.
		보관장소	각환장(도림동 386-8)
		처리결과	
037		발견일시	2020. 9. 21.
		발견장소	만수역 4번출구
		종 류	성인용
		색상/특징	검은색
		제조회사명	지오닉스
		이동보관일	2020. 10. 14.
		보관장소	각환장(도림동 386-8)
		처리결과	
038		발견일시	2020. 9. 21.
		발견장소	만수역 4번출구
		종 류	성인용
		색상/특징	흰색
		제조회사명	지오닉스
		이동보관일	2020. 10. 14.
		보관장소	각환장(도림동 386-8)
		처리결과	
039		발견일시	2020. 9. 21.
		발견장소	만수역 4번출구
		종 류	성인용
		색상/특징	검은색
		제조회사명	알론스포츠
		이동보관일	2020. 10. 14.
		보관장소	각환장(도림동 386-8)
		처리결과	
040		발견일시	2020. 9. 21.
		발견장소	만수역 4번출구
		종 류	아동용
		색상/특징	분홍색
		제조회사명	삼천리
		이동보관일	2020. 10. 14.
		보관장소	각환장(도림동 386-8)
		처리결과	

무단방치 자전거 관리대장(2020. 10.)

041		발견일시	2020. 9. 21.
		발견장소	만수역 4번출구
		종 류	성인용
		색상/특징	검은색
		제조회사명	삼천리
		이동보관일	2020. 10. 14.
		보관장소	직할장(도림동 386-8)
		처리결과	
042		발견일시	2020. 9. 21.
		발견장소	만수역 4번출구
		종 류	성인용
		색상/특징	흰색
		제조회사명	알콘스포츠
		이동보관일	2020. 10. 14.
		보관장소	직할장(도림동 386-8)
		처리결과	
043		발견일시	2020. 9. 21.
		발견장소	만수역 4번출구
		종 류	성인용
		색상/특징	빨간색
		제조회사명	알콘스포츠
		이동보관일	2020. 10. 14.
		보관장소	직할장(도림동 386-8)
		처리결과	
044		발견일시	2020. 9. 21.
		발견장소	만수역 1번출구
		종 류	성인용
		색상/특징	흰색
		제조회사명	아엑스
		이동보관일	2020. 10. 16.
		보관장소	직할장(도림동 386-8)
		처리결과	
046		발견일시	2020. 9. 21.
		발견장소	만수역 1번출구
		종 류	성인용
		색상/특징	노란색
		제조회사명	알콘스포츠
		이동보관일	2020. 10. 16.
		보관장소	직할장(도림동 386-8)
		처리결과	

무단방치 자전거 관리대장(2020. 10.)

046		발견일시	2020. 9. 21.
		발견장소	만수역 1번출구
		종 류	성인용
		색상/특징	검은색
		제조회사명	삼천리
		이동보관일	2020. 10. 18.
		보관장소	적항창(도림동 388-8)
		처리결과	
047		발견일시	2020. 9. 21.
		발견장소	만수역 1번출구
		종 류	성인용
		색상/특징	검은색
		제조회사명	슈프림
		이동보관일	2020. 10. 18.
		보관장소	적항창(도림동 388-8)
		처리결과	
048		발견일시	2020. 9. 21.
		발견장소	만수역 1번출구
		종 류	성인용
		색상/특징	검은색
		제조회사명	삼천리
		이동보관일	2020. 10. 18.
		보관장소	적항창(도림동 388-8)
		처리결과	
049		발견일시	2020. 9. 21.
		발견장소	만수역 1번출구
		종 류	성인용
		색상/특징	검은색
		제조회사명	삼천리
		이동보관일	2020. 10. 18.
		보관장소	적항창(도림동 388-8)
		처리결과	
050		발견일시	2020. 9. 21.
		발견장소	만수역 1번출구
		종 류	성인용
		색상/특징	흰색
		제조회사명	알몬스포츠
		이동보관일	2020. 10. 18.
		보관장소	적항창(도림동 388-8)
		처리결과	

무단방치 자전거 관리대장(2020. 10.)

061		발견일시	2020. 9. 21.
		발견장소	만수역 1번출구
		종 류	성인용
		색상/특징	검은색
		제조회사명	삼천리
		이동보관일	2020. 10. 18.
		보관장소	각함장(도림동 386-8)
		처리결과	
062		발견일시	2020. 9. 21.
		발견장소	만수역 1번출구
		종 류	성인용
		색상/특징	흰색
		제조회사명	삼천리
		이동보관일	2020. 10. 18.
		보관장소	각함장(도림동 386-8)
		처리결과	
063		발견일시	2020. 10. 19.
		발견장소	간석동 282-1
		종 류	성인용
		색상/특징	검은색
		제조회사명	알론스포츠
		이동보관일	2020. 10. 23.
		보관장소	각함장(도림동 386-8)
		처리결과	

무단방치 자전거 관리대장(2020. 11.)

001		발견일시	2020. 10. 26.
		발견장소	논현동 677-1
		종 류	성인용
		색상/특징	흰색
		제조회사명	삼천리
		이동보관일	2020. 11. 9.
		보관장소	적현장(도림동 386-8)
		처리결과	
002		발견일시	2020. 10. 26.
		발견장소	논현동 677-1
		종 류	성인용
		색상/특징	흰색
		제조회사명	스마트바이크
		이동보관일	2020. 11. 9.
		보관장소	적현장(도림동 386-8)
		처리결과	
003		발견일시	2020. 10. 27.
		발견장소	예술회관 7번출구
		종 류	성인용
		색상/특징	하늘색
		제조회사명	트릭
		이동보관일	2020. 11. 10.
		보관장소	적현장(도림동 386-8)
		처리결과	
004		발견일시	2020. 10. 27.
		발견장소	예술회관 7번출구
		종 류	성인용
		색상/특징	파란색
		제조회사명	식별불가
		이동보관일	2020. 11. 10.
		보관장소	적현장(도림동 386-8)
		처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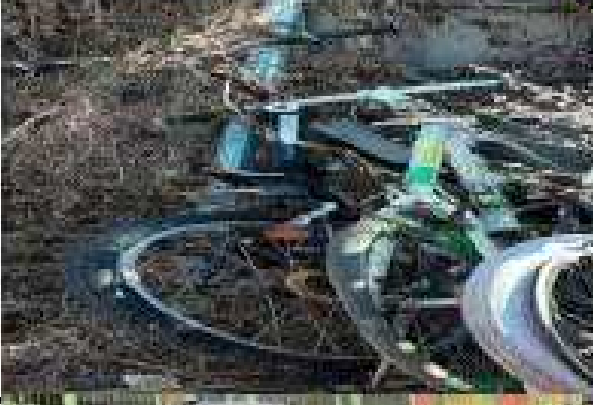
무단방치 자전거 관리대장(2020. 11.)

006		발견일시	2020. 10. 27.
		발견장소	여술회관 8번출구
		종 류	성인용
		색상/특징	파란색
		제조회사명	식별불가
		이동보관일	2020. 11. 10.
		보관장소	적환장(도림동 386-8)
		처리결과	
006		발견일시	2020. 10. 27.
		발견장소	여술회관 8번출구
		종 류	성인용
		색상/특징	은색
		제조회사명	아텍스
		이동보관일	2020. 11. 10.
		보관장소	적환장(도림동 386-8)
		처리결과	
007		발견일시	2020. 10. 27.
		발견장소	여술회관 8번출구
		종 류	성인용
		색상/특징	검은색
		제조회사명	삼천리
		이동보관일	2020. 11. 10.
		보관장소	적환장(도림동 386-8)
		처리결과	
008		발견일시	2020. 10. 27.
		발견장소	여술회관 8번출구
		종 류	성인용
		색상/특징	은색
		제조회사명	식별불가
		이동보관일	2020. 11. 10.
		보관장소	적환장(도림동 386-8)
		처리결과	

무단방치 자전거 관리대장(2020. 12.)

001		발견일시	2020. 11. 20.
		발견장소	구월동 한들교회앞
		종 류	성인용
		색상/특징	파란색
		제조회사명	삼천리
		이동보관일	2020. 12. 8.
		보관장소	적항창(도림동 386-8)
		처리결과	
002		발견일시	2020. 11. 28.
		발견장소	논현동 677-1
		종 류	성인용
		색상/특징	검은색
		제조회사명	엑사이더
		이동보관일	2020. 12. 7.
		보관장소	적항창(도림동 386-8)
		처리결과	
003		발견일시	2020. 10. 26.
		발견장소	논현동 744-5
		종 류	성인용
		색상/특징	파란색
		제조회사명	삼천리
		이동보관일	2020. 12. 14.
		보관장소	적항창(도림동 386-8)
		처리결과	
004		발견일시	2020. 10. 26.
		발견장소	논현동 744-5
		종 류	성인용
		색상/특징	흰색
		제조회사명	알론스포츠
		이동보관일	2020. 12. 14.
		보관장소	적항창(도림동 386-8)
		처리결과	
006		발견일시	2020. 10. 26.
		발견장소	논현동 744-5
		종 류	성인용
		색상/특징	흰색
		제조회사명	삼천리
		이동보관일	2020. 12. 14.
		보관장소	적항창(도림동 386-8)
		처리결과	

무단방치 자전거 관리대장(2020. 12.)

006		발견일시	2020. 10. 26.
		발견장소	논현동 744-5
		종 류	
		색상/특징	빨간색
		제조회사명	식별불가
		이동보관일	2020. 12. 14.
		보관장소	적함장(도림동 386-8)
		처리결과	
007		발견일시	2020. 10. 26.
		발견장소	논현동 744-5
		종 류	성인용
		색상/특징	은색
		제조회사명	삼천리
		이동보관일	2020. 12. 14.
		보관장소	적함장(도림동 386-8)
		처리결과	
008		발견일시	2020. 10. 26.
		발견장소	논현동 744-5
		종 류	성인용
		색상/특징	검은색
		제조회사명	식별불가
		이동보관일	2020. 12. 14.
		보관장소	적함장(도림동 386-8)
		처리결과	
009		발견일시	2020. 10. 26.
		발견장소	논현동 744-5
		종 류	성인용
		색상/특징	검은색
		제조회사명	식별불가
		이동보관일	2020. 12. 14.
		보관장소	적함장(도림동 386-8)
		처리결과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266호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남동 노인복지관)사업 실시계획 인가 공고·열람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남동 노인복지관)사업의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신청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 공영개발과(☎032-453-5682), 도시재생과(☎032-453-2955)에 갖추어 놓았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4일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13-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 명칭: 남동 노인복지관 건립사업

3. 사업규모

- A=8,589㎡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명: 남동구청장(공영개발과)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5.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고시일 ~ 2022.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 붙임

7. 열람 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

8. 열람 장소

- 남동구청(공영개발과 032-453-5682, 도시재생과 032-453-2955)

9. 관계 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붙임] 편입 토지조서

구분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비 고
						성명	주소	
계				11,792	8,589			
1	수산동	7	답	1,393	1,384	남동구		
2	수산동	7-6	제	645	10	인천광역시		
3	수산동	7-8	도	843	843	인천광역시		
4	수산동	13-1	전	3,326	3,326	남동구		
5	수산동	13-2	전	950	950	남동구		
6	수산동	13-5	도	89	89	인천광역시		
7	수산동	13-6	답	76	76	이○○		
8	수산동	13-7	도	384	384	국 (기획재정부)		
9	수산동	13-9	도	40	20	국 (국토교통부)		
10	수산동	13-33	답	7	7	인천광역시		
11	수산동	13-34	도	19	18	국 (국토교통부)		
12	수산동	13-43	도	3,234	696	인천광역시		
13	수산동	14-1	전	575	575	남동구		
14	수산동	14-2	도	211	211	국 (기획재정부)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268호

지방세 공시송달

- 송달 대상자 : 다원에셋대부 외 487명
- 서류의 송달지 : 내역별첨
- 서류의 명칭 : 2021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고지서

위의 서류를 귀하(귀 법인)에게 송달하고자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로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반송되어 송달불능인 바, 당초 납기 2021.1.31.일을 2021.2.28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오니 기한 내에 금융기관 및 전자납부 등으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년 2 월 2 일

남 동 구 청 장

2021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고지서 공시송달

연번	납세번호	개인(법인)명	납세자 번호	과세물건	세액합계	공고사유
1	114001 2021 01 1 510 000239	다**에**대**	120111- *****	대부중개업	67,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	114001 2021 01 1 510 000416	(주)환**기**	120111- *****	해외건설업(전기공사업)	54,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	114001 2021 01 1 510 000526	김**희	601119- *****	베르우스상동[주택 건설사업자]	54,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4	114001 2021 01 1 510 000575	(주)커**니	110111- *****	커피니(휴게음식점)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5	114001 2021 01 1 510 000749	이**경	850328- *****	와이앤비컴퍼니G[통신 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6	114001 2021 01 1 510 000772	조**민	980917- *****	더비라이프[통신판 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7	114001 2021 01 1 510 000885	주**회**드** 카	120111- *****	드림카[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8	114001 2021 01 1 510 000913	이**진	820105- *****	남남(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9	114001 2021 01 1 510 000922	김**관	450317- *****	케이티케이[통신판 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0	114001 2021 01 1 510 000925	(주)반**주	120111- *****	(주)반에주[통신판 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1	114001 2021 01 1 510 000948	주**회**수** 리**	120111- *****	(주)수올리나[통신 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2	114001 2021 01 1 510 001001	한**정**사** 협**조**	120151- *****	한국정원사회협동조 합(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3	114001 2021 01 1 510 001003	주**회**허** 애**	120111- *****	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4	114001 2021 01 1 510 001091	이**정	780219- *****	웨딩쟁이(통신판매 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5	114001 2021 01 1 510 001108	주**회**오** 비**스**인** (*M*E*c*a*g*)	120111- *****	주식회사 오엠비익스체인지(0 MB Exchange)(통신판매 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6	114001 2021 01 1 510 001114	주**회**예** 노**	120111- *****	(주)예히노끼(통신 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7	114001 2021 01 1 510 001170	(주)실**콘** 테**	120111- *****	(주)실리콘엔테크(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8	114001 2021 01 1 510 001181	이**아	721228- *****	인 커뮤니케이션(통신 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9	114001 2021 01 1 510 001197	최**경	630109- *****	씨엘엠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0	114001 2021 01 1 510 001223	김**일	740113- *****	에이멘소프트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1	114001 2021 01 1 510 001251	김**경	830428- *****	인아웃뷰티[통신판 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2	114001 2021 01 1 510 001267	조**미	861028- *****	리코까사[통신판매 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3	114001 2021 01 1 510 001271	이**주	930816- *****	야야[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4	114001 2021 01 1 510 001425	조**동	721018- *****	동우[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5	114001 2021 01 1 510 001502	청**메**칼	110111- *****	(주)청담메디칼[통 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6	114001 2021 01 1 510 001518	주**회**에** 차**케**컴** 니	120111- *****	(주)에이치엔케이컴 퍼니[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7	114001 2021 01 1 510 001600	송**름	910706- *****	송크[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8	114001 2021 01 1 510 001718	변**섭	780312- *****	조이텐트[통신판매 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9	114001 2021 01 1 510 001761	장**조	650401- *****	모모아팡팡[통신판 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0	114001 2021 01 1 510 001818	윤**건	821019- *****	나두(nadu)[통신판 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1	114001 2021 01 1 510 001830	정**정	790506- *****	뉴욕브랜드[통신판 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2	114001 2021 01 1 510 001850	류**재	910429- *****	니트스튜디오(Neat, Studio)[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3	114001 2021 01 1 510 001853	주**회** **스*0*	120111- *****	(주)룩스307[통신판 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4	114001 2021 01 1 510 001882	손**연	870916- *****	플라츠[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5	114001 2021 01 1 510 001962	김**이	920909- *****	브이쇼룸[통신판매 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6	114001 2021 01 1 510 001970	김**상	610309- *****	서퍼브[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7	114001 2021 01 1 510 002009	한**호	921017- *****	툰랩[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8	114001 2021 01 1 510 002012	이**은	880119- *****	블루무빙[통신판매 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9	114001 2021 01 1 510 002091	주**회**디** 네**웍**	120111- *****	디피네트웍스[통신 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40	114001 2021 01 1 510 002141	임**렬	880409- *****	씨엘(CL)컴퍼니[통 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41	114001 2021 01 1 510 002194	주**회**파** 너**지**센**	120111- *****	(주)파트너스지원센 터[전화권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42	114001 2021 01 1 510 002262	김**국	791213- *****	디엘코리아[방문판 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43	114001 2021 01 1 510 002390	강**성	750409- *****	원협 187[중도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44	114001 2021 01 1 510 002725	박**화	661105- *****	와와노래연습장[노 래연습장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45	114001 2021 01 1 510 002800	박**진	901116- *****	더골드네일[미용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46	114001 2021 01 1 510 002959	하**로**무** 인	124771- *****	하나로세무법인[대 표:심광홍]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47	114001 2021 01 1 510 002989	대**감**평** 법**(**인** 사*	110111- *****	대한감정평가법인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48	114001 2021 01 1 510 002998	주**회**대** 통**	134111- *****	(주)대길통상(수입 식품등 수입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49	114001 2021 01 1 510 003053	박**훈	830916- *****	포인투유[수입식품 등인터넷구매대행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50	114001 2021 01 1 510 003093	문**모	700810- *****	한국융합코딩협회(융합코딩지도사)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51	114001 2021 01 1 510 003167	주**회** **캐**	110111- *****	감성커피[휴게음식 점영업]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52	114001 2021 01 1 510 003173	윤**선	871110- *****	윤양과자점[휴게음 식점업]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53	114001 2021 01 1 510 003644	조**현	860228- *****	썩맥[일반음식점]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54	114001 2021 01 1 510 003699	김**자	640420-*****	전씨술방[일반음식점업]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55	114001 2021 01 1 510 003936	김**호	960505-*****	미담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56	114001 2021 01 1 510 004387	김**택	731223-*****	케이엠지엠 구월점[일반음식점]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57	114001 2021 01 1 510 004407	양**두	861221-*****	브라더 오덴바[일반음식점 영업]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58	114001 2021 01 1 510 004467	김**열	730703-*****	꽃게길간장게장정식 [일반음식점영업]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59	114001 2021 01 1 510 004481	배**숙	621118-*****	구월현식당[일반음 식점영업]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60	114001 2021 01 1 510 004521	주**회** **캐**	110111-*****	좋은아침 페스츄리[제과점영 업]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61	114001 2021 01 1 510 004643	윤**선	871110-*****	윤양과자점[즉석판 매제도가공업]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62	114001 2021 01 1 510 004858	(주)에**석**	120111-*****	(주)에담석재[전문 건설업/석공사업]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63	114001 2021 01 1 510 005290	(주)도**환**	151111-*****	화물자동차운송사업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64	114001 2021 01 1 510 005618	청**메**갈	110111-*****	(주)청담메디칼[의 료기기판매(임대)업]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65	114001 2021 01 1 510 005675	주**회**클** 팜	120111-*****	클린팜[화장품책임 판매업]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66	114001 2021 01 1 510 005687	(주)반**주	120111-*****	(주)반에주[화장품 책임판매]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67	114001 2021 01 1 510 005854	(주)환**기**	120111-*****	(주)환호기업(전기 공사업)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68	114001 2021 01 1 510 005956	주**회**해** 환**엔**니** 링	120111-*****	주식회사 해림환경엔지니어링 [공장등록]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69	114001 2021 01 1 510 006055	송**일	740505-*****	세일로지스[화물자 동차운송주선사업]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70	114001 2021 01 1 510 006118	박**상	540927-*****	산자유통인등록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71	114001 2021 01 1 510 006137	홍**표	450415-*****	산자유통인등록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72	114001 2021 01 1 510 006144	고**준	500309-*****	산지수집상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73	114001 2021 01 1 510 006566	이**일	750206-*****	재아축산[식육즉석 판매가공업]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74	114001 2021 01 1 510 006585	김**희	761031-*****	시우테크[부가통신 사업자]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75	114001 2021 01 1 510 006678	김**상	610309-*****	서퍼브[건강기능식 품판매업]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76	114001 2021 01 1 510 006702	주**회** **토**	120111-*****	(주)아토즈[건강기 능식품판매업]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77	114001 2021 01 1 510 006724	손**연	870916-*****	플랫츠[건강기능식 품판매업]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78	114001 2021 01 1 510 006729	주**회**태** 종**공**	120111-*****	건물위생관리업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79	114001 2021 01 1 510 006892	하**로**무** 인	124771-*****	하나로세무법인(남 동지점)[보험사무대 행인가]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80	114001 2021 01 1 520 008096	H*A*G*H*N*I	760420-*****	사계절샤브샤브뷔페 [일반음식점업]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81	114001 2021 01 1 520 008466	신**기	620113-*****	간판이야기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82	114001 2021 01 1 520 008850	이**주	800302-*****	하이멘토2:1 수학교습소	18,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83	114001 2021 01 1 521 009002	주**회**새** 종**건**	120111-*****	주식회사새늘종합건설(건축공사업)	67,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84	114001 2021 01 1 521 009196	김**훈	920213-*****	오버크랙[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85	114001 2021 01 1 521 009283	유**	710207-*****	힐링노래연습장[노래연습장]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86	114001 2021 01 1 521 009370	(주)베**타** 글**벌	110111-*****	베리타스글로벌(식품등수입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87	114001 2021 01 1 521 009666	김**희	590115-*****	칼튼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88	114001 2021 01 1 521 009673	하**숙	540808-*****	만남주막골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89	114001 2021 01 1 521 010166	김**기	640112-*****	tictoc당구장	27,000	
90	114001 2021 01 1 521 010195	유**철	580224-*****	서울치즈연수남동대리점(축산물판매업)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91	114001 2021 01 1 521 010208	세**법**총**	124771-*****	세무법인총무(대표: 오선경)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92	114001 2021 01 1 521 010273	김**일	860303-*****	스마트공인중개사사무소[부동산중개업]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93	114001 2021 01 1 521 010342	고**민	841029-*****	주택임대사업자(1)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94	114001 2021 01 1 521 010534	추**숙	740321-*****	에띠헤어	18,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95	114001 2021 01 1 522 010720	전**희	770930-*****	위버다임(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96	114001 2021 01 1 522 011246	(주)삼**파** 프**연	120111-*****	상하수도설비공사업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97	114001 2021 01 1 522 011251	(주)정**건**	120111-*****	전문건설업(상하수도설비공사업)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98	114001 2021 01 1 522 011482	(주)대**어** 렬	120111-*****	(주)대성어페럴[공장등록]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99	114001 2021 01 1 522 011490	(주)참**은** 권**	120111-*****	(주)참줄은태권도[체육도장업]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00	114001 2021 01 1 530 011930	태**건**(주)	120111-*****	태선건설(주)[건설업(종합공사시공)]	67,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01	114001 2021 01 1 530 011935	주**회**정** 여**사	110111-*****	(주)정민여행사[일반여행업]	67,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02	114001 2021 01 1 530 012075	R*N*G*I*H*N	630407-*****	지구인(G9in)[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03	114001 2021 01 1 530 012119	신**훈	861220-*****	굿즈앤피플[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04	114001 2021 01 1 530 012135	임**현	780705-*****	바른자세연구소[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05	114001 2021 01 1 530 012198	박**준	811110-*****	라라디자인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06	114001 2021 01 1 530 012199	주**회**집** 전**합**구	120111-*****	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07	114001 2021 01 1 530 012339	신**철	770129-*****	심플컴퍼니[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08	114001 2021 01 1 530 012362	C*I*J*L*N	570227-*****	준혁무역[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09	114001 2021 01 1 530 012419	오**섬	720117-*****	투제이[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10	114001 2021 01 1 530 012467	이**희	801005-*****	맘투오[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11	114001 2021 01 1 530 012479	유**영	700929-*****	대대박[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12	114001 2021 01 1 530 012485	조**철	720527-*****	원공조[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13	114001 2021 01 1 530 012658	주**회**정**여**사	110111-*****	주식회사 정민여행사[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14	114001 2021 01 1 530 012659	박**선	791121-*****	마켓벨롱[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15	114001 2021 01 1 530 012660	김**영	900122-*****	피크닉온선데이[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16	114001 2021 01 1 530 012678	임**현	931119-*****	미미잡화점[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17	114001 2021 01 1 530 012684	조**정	871030-*****	담은 : 엠틀[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18	114001 2021 01 1 530 012849	안**준	510106-*****	제비표페인트남동총판(유해화학물질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19	114001 2021 01 1 530 012910	주**회**화**	160111-*****	주식회사 화랑[수입식품등수입, 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20	114001 2021 01 1 530 012996	강**자	660501-*****	에펠주동원피자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21	114001 2021 01 1 530 013161	김**하	500207-*****	어머나원숙성생삼겹살(일반음식점)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22	114001 2021 01 1 530 013323	정**건**주**회**	110111-*****	정희건설 주식회사(철근콘크리트공사업)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23	114001 2021 01 1 530 013921	주**회**집**전**합**구	120111-*****	(주)한국장애인장학사업장(인쇄사)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24	114001 2021 01 1 530 014024	송**희	660314-*****	굿모닝공인중개사사무소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25	114001 2021 01 1 530 014030	김**미	690910-*****	현대 공인중개사사무소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26	114001 2021 01 1 540 014665	주**회**스**이**리**	120111-*****	주식회사 스카이코리아(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27	114001 2021 01 1 550 015439	권**희	750124-*****	비밀	67,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28	114001 2021 01 1 550 015447	(주)준**	230111-*****	준코뮤직타운 인천간석점	67,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29	114001 2021 01 1 550 015664	마**팅**리**(**)	120114-*****	마켓팅코리아유한회사(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30	114001 2021 01 1 550 015675	최**식	630915-*****	두리(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31	114001 2021 01 1 550 015749	최**애	620730-*****	한솔통신[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32	114001 2021 01 1 550 015773	김**우	791210-*****	하이원(방문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33	114001 2021 01 1 550 016178	이**선	600624-*****	일품식당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34	114001 2021 01 1 550 016307	김**순	650622-*****	통돼지두루치기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35	114001 2021 01 1 550 016414	장**희	591214-*****	회떠가는집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36	114001 2021 01 1 550 016447	무**(주)	120111-*****	무한주식회사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37	114001 2021 01 1 550 016865	주**회**이**푸**	124411-*****	연백정육점(식육판매업)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38	114001 2021 01 1 550 017035	금**	630920-*****	금준행정사사무소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39	114001 2021 01 1 550 017075	이**식	621016-*****	주택임대사업자(1)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40	114001 2021 01 1 550 017089	황**길	810403-*****	주택임대사업자등록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41	114001 2021 01 1 551 017627	남**용	810711-*****	와이비#1(YB#1)[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42	114001 2021 01 1 551 017651	김**순	621110-*****	원조30년전통맛집[청소년게임제공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43	114001 2021 01 1 551 018396	이**란	900518-*****	배우는 배우다 연기뮤지컬 학원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44	114001 2021 01 1 560 018972	주**회**글** 별**리**상**	120111-*****	주식회사 글로벌코리아상사[국외여행업]	67,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45	114001 2021 01 1 560 018973	주**회**글** 별**리**상**	120111-*****	주식회사 글로벌코리아상사[국내여행업]	67,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46	114001 2021 01 1 560 019093	임**범	890725-*****	에스비컴퍼니[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47	114001 2021 01 1 560 019165	오**호	700624-*****	닥터푸드[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48	114001 2021 01 1 560 019182	세**데**주** 회**	120111-*****	(주)세광테크(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49	114001 2021 01 1 560 019240	주**회**엠** 이**글**별	120111-*****	주식회사 엠아이디글로벌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50	114001 2021 01 1 560 019291	안**재	950111-*****	마이마리아(mymar ia)[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51	114001 2021 01 1 560 019373	김**민	951006-*****	포커스피플[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52	114001 2021 01 1 560 019447	김**수	881129-*****	에스유[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53	114001 2021 01 1 560 019489	차**애	900717-*****	벤틀샴[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54	114001 2021 01 1 560 019501	박**이	910409-*****	프리모도노[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55	114001 2021 01 1 560 019626	박**민	781227-*****	프리덤메스트[통신판매업]	31,9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56	114001 2021 01 1 560 019658	노**섭	880505-*****	섭이네보물창고[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57	114001 2021 01 1 560 019689	최**희	860215-*****	인셀덤 빅토리[후원방문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58	114001 2021 01 1 560 019939	노**관	780110-*****	배스킨라빈스 인천만수역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59	114001 2021 01 1 560 020221	오**호	700624-*****	닥터푸드[즉석판매 제조가공업]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60	114001 2021 01 1 560 020250	주**회**물** 산**	124411-*****	물과산소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61	114001 2021 01 1 560 020798	이**섭	720529-*****	인천84바1244(메가트럭)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62	114001 2021 01 1 560 020932	김**진	681015-*****	휘슬(화장품책임판매업)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63	114001 2021 01 1 560 021047	박**운	770427-*****	화우돈[식육판매업]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64	114001 2021 01 1 560 021057	오**호	700624-*****	닥터신문[특수주간신문]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65	114001 2021 01 1 560 021128	김**조	440916-*****	하나 부동산중개사무소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66	114001 2021 01 1 560 021273	중**산**건** (주)	110111-*****	중앙산업건설(주)[석면해체철거업]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67	114001 2021 01 1 560 021382	애**가**드** 수**월** (주)	120111- *****	기타수질오염원 설치	18,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68	114001 2021 01 1 570 021606	박**성	710613- *****	리프트포커스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69	114001 2021 01 1 570 021635	(주)월**공**	120111- *****	월드공영(유해화학 물질 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70	114001 2021 01 1 570 021728	이**정	900106- *****	자담치킨 향촌점[일반음식점 업]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71	114001 2021 01 1 570 022477	최**희	511209- *****	십자매 미용실	18,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72	114001 2021 01 1 580 022754	J*N*A*H*A	820904- *****	요기양양[일반음식 점]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73	114001 2021 01 1 580 022836	박**식	740519-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개인화물/인천84바 3235]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74	114001 2021 01 1 580 023044	길**식	560702- *****	신화공인중개사사무 소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75	114001 2021 01 1 580 023156	박**영	720125- *****	생각하는 아이들 수학 교습소	18,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76	114001 2021 01 1 581 023280	신**경	791118- *****	쇼어피플[통신판매 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77	114001 2021 01 1 582 023712	최**아	950205- *****	마이스터통신[통신 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78	114001 2021 01 1 582 024152	육**애	730405- *****	오늘은좋은날[일반 음식점영업]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79	114001 2021 01 1 583 024960	우**제	630114- *****	해피모모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80	114001 2021 01 1 583 024968	주**회**글** 별**리**상**	120111- *****	(주)글로벌코리아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81	114001 2021 01 1 583 025719	원**재	581210- *****	인천99아5936(현대B CT트레터)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82	114001 2021 01 1 583 025949	(주)파**온	120111- *****	(주)파워온[공장등 록]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83	114001 2021 01 1 583 025979	(주)애**앤** 인	110111- *****	(주)애드앤사인(옥 외광고업)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84	114001 2021 01 1 583 025989	주**회**에** 앤**씨**	120111- *****	(주)에프앤지씨티[국제물류주선업]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85	114001 2021 01 1 583 026092	동**손**사** 주**회**	110111- *****	동림손해사정(주)(손해사정업)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86	114001 2021 01 1 583 026131	(주)정**하** 징**	120111- *****	(주)정성하우징텍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87	114001 2021 01 1 583 026286	조**진	670420- *****	쁘띠헤어	18,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88	114001 2021 01 1 650 026598	농**회**법** 유**회**라** 프**	120114- *****	농업회사법인유한회 사라이프팜[통신판 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89	114001 2021 01 1 650 026635	박**민	860404- *****	온화[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90	114001 2021 01 1 650 026740	김**영	891006- *****	재주재[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91	114001 2021 01 1 650 026812	안**우	780109- *****	비베스트(Vivest)[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92	114001 2021 01 1 650 026865	김**은	800226- *****	러빙샵[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93	114001 2021 01 1 650 026877	(주)아**푸**	120111- *****	(주)아라푸드[통신 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94	114001 2021 01 1 650 026893	양**지	880204- *****	하마빌리지[통신판 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95	114001 2021 01 1 650 026940	백**인	640524-*****	가나다샵[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96	114001 2021 01 1 650 026993	정**식	820205-*****	오드리카[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97	114001 2021 01 1 650 026994	이**열	780314-*****	하니하늘[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98	114001 2021 01 1 650 027009	최**정	840607-*****	애니홍삼[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199	114001 2021 01 1 650 027010	하**환	960120-*****	한해마켓[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00	114001 2021 01 1 650 027020	석**찬	911213-*****	석거상[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01	114001 2021 01 1 650 027080	주**훈	620306-*****	아트PC[인터넷시설제공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02	114001 2021 01 1 650 027383	(주)쏘**	134111-*****	9공수카페[일반음식점업]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03	114001 2021 01 1 650 027603	임**균	640703-*****	장호덕손만두[일반음식점영업]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04	114001 2021 01 1 650 027631	김**아	730420-*****	기정떡 앤 영의정인절미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05	114001 2021 01 1 650 028092	제**앤** **드	135511-*****	제이앤씨메드(주)[의료기기판매업]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06	114001 2021 01 1 650 028280	태**전**공** (주)	135511-*****	태광전기공업(주)[공장등록]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07	114001 2021 01 1 655 028894	조**국	710222-*****	국제상사[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08	114001 2021 01 1 660 029625	이**자	610124-*****	주택임대사업자(8)	54,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09	114001 2021 01 1 660 029703	(주)엘**피** 드	120111-*****	엘엔피푸드[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10	114001 2021 01 1 660 029737	장**호	750407-*****	다송찬[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11	114001 2021 01 1 660 029757	김**철	790102-*****	엔씨텍(NCTEC)(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12	114001 2021 01 1 660 029875	김**규	630620-*****	베스트컴퍼니[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13	114001 2021 01 1 660 029945	고**현	770505-*****	지디에이치서비스[통신판매]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14	114001 2021 01 1 660 030115	오**석	660517-*****	범인터내셔널[초경량비행장치사용]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15	114001 2021 01 1 660 030118	농**회**법** 주**회**아** 리**	120111-*****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아그리팜(식품등수입판매업)	39,26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16	114001 2021 01 1 660 030130	정**숙	530815-*****	주택임대사업자(4)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17	114001 2021 01 1 660 030325	박**서	600320-*****	남촌공원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18	114001 2021 01 1 660 030638	정**구	851112-*****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달화물]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19	114001 2021 01 1 660 030797	주**회**계** 스**이	120111-*****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인천99아1446]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20	114001 2021 01 1 660 030895	이**철	560826-*****	남촌동609-1(도로점용)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21	114001 2021 01 1 660 030975	(주)진**엠** 크	120111-*****	진성엠테크[공장등록]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22	114001 2021 01 1 660 030981	고**소**로** 업(주)	120111-*****	고려소각로공업[공장등록]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23	114001 2021 01 1 660 030987	(주)폴**캠	120111-*****	(주)폴리캠[공장등록]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24	114001 2021 01 1 660 031385	(주)폴**캠	120111-*****	(주)폴리캠(대기)	18,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25	114001 2021 01 1 660 031417	(주)폴**캠	120111-*****	(주)폴리캠(악취)	18,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26	114001 2021 01 1 690 031548	김**웅	491011-*****	대영콘크리트[공장등록]	67,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27	114001 2021 01 1 690 031566	김**선	840729-*****	평키타운	67,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28	114001 2021 01 1 690 031651	송**성	891121-*****	중고팜(유사투자자문업 신고)	67,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29	114001 2021 01 1 690 031687	김**용	800320-*****	기분좋은페르마학원	54,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30	114001 2021 01 1 690 031805	신**운	880118-*****	디엘로[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31	114001 2021 01 1 690 031817	김**숙	751203-*****	위그살롱[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32	114001 2021 01 1 690 031831	고**애	780113-*****	더리치[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33	114001 2021 01 1 690 031834	정**경	770102-*****	케이패커스[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34	114001 2021 01 1 690 031839	주**회**어**스**리**프**비	120111-*****	(주)어니스트리에프앤비[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35	114001 2021 01 1 690 031857	이**애	830908-*****	에쁜걸로[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36	114001 2021 01 1 690 031919	최**묵	760411-*****	목조주택HM(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37	114001 2021 01 1 690 031936	주**회**플**원	120111-*****	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38	114001 2021 01 1 690 031956	최**진	860815-*****	출장자동차бат데리(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39	114001 2021 01 1 690 031992	모**화**스**틱	134511-*****	주식회사모리화코스메틱(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40	114001 2021 01 1 690 031997	김**숙	760106-*****	에스투(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41	114001 2021 01 1 690 032037	김**종	890707-*****	클로버몰[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42	114001 2021 01 1 690 032096	홍**기	880706-*****	프리미엄MG[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43	114001 2021 01 1 690 032115	주**회**드**즈	120111-*****	(주)레드위즈[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44	114001 2021 01 1 690 032116	사**소**트**자**주**회**	120111-*****	사라소프트(주)[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45	114001 2021 01 1 690 032166	김**민	830205-*****	플레이워크코퍼레이션[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46	114001 2021 01 1 690 032177	김**일	841022-*****	신박통신[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47	114001 2021 01 1 690 032181	조**빈	940517-*****	블리스팜[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48	114001 2021 01 1 690 032221	조**균	820505-*****	제이커머스[통신판매업]	40,500	
249	114001 2021 01 1 690 032232	박**옥	660509-*****	판바기네[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50	114001 2021 01 1 690 032290	차**인	680225-*****	중소기업정책자금연구원[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51	114001 2021 01 1 690 032294	황**식	591103-*****	명진수산[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52	114001 2021 01 1 690 032340	장**영	740925-*****	짜아양공작소[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53	114001 2021 01 1 690 032348	정**훈	941001-*****	더블에이치shop[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54	114001 2021 01 1 690 032362	조**숙	720317-*****	땡큐몰[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55	114001 2021 01 1 690 032413	주**회** **드**	120111-*****	(주)리드업[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56	114001 2021 01 1 690 032426	이**우	710812-*****	지디컴퍼니(GD Company)[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57	114001 2021 01 1 690 032477	신**연	920201-*****	뉴라이트(NewLight)[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58	114001 2021 01 1 690 032481	Y*N*G*A*G*H*	840331-*****	차코(C&K)[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59	114001 2021 01 1 690 032485	윤**호	940726-*****	소중한그대[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60	114001 2021 01 1 690 032510	정**기	681205-*****	요플레이스[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61	114001 2021 01 1 690 032534	임**희	780802-*****	이룸플라워[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62	114001 2021 01 1 690 032561	세**조**건** (주)	120111-*****	세림조경건설(주)[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63	114001 2021 01 1 690 032657	허**욱	800719-*****	팝콘PlayZone[청소년게임제공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64	114001 2021 01 1 690 032663	윤**무	770515-*****	골프PC[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65	114001 2021 01 1 690 032711	장**순	610723-*****	유일하이테크[유해화학물질영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66	114001 2021 01 1 690 032730	이**비	880606-*****	뮤토 뮤티샵(미용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67	114001 2021 01 1 690 032819	장**영	740925-*****	짜아양공작소[펠트지도사]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68	114001 2021 01 1 690 032909	안**학	700417-*****	왔다짱뽕[일반음식점]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69	114001 2021 01 1 690 033344	세**조**건** (주)	120111-*****	세림조경건설(주)[조경식재공사업]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70	114001 2021 01 1 690 033851	김**범	880712-*****	독일보청기(의료기기의판매업)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71	114001 2021 01 1 690 033896	주**회**스** 이**리**	120111-*****	(주)스카이크코리아[화장품제조]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72	114001 2021 01 1 690 034073	사**소**트** 자**주**회**	120111-*****	사라소프트(주)[출판업]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73	114001 2021 01 1 690 034076	사**소**트** 자**주**회**	120111-*****	사라소프트(주)[인쇄업]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74	114001 2021 01 1 690 034080	최**남	480930-*****	씨앤케이2[공장등록]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75	114001 2021 01 1 690 034264	김**중	890707-*****	클로버몰[건강기능식품판매업]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76	114001 2021 01 1 690 034269	조**균	820505-*****	제이트레이딩[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27,000	
277	114001 2021 01 1 700 034873	세**	120111-*****	리치아노호텔[숙박업]	67,500	
278	114001 2021 01 1 700 034923	골**코**트** 이**엠**	120111-*****	(주)골드코스트에이치엠씨[환전업]	54,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79	114001 2021 01 1 700 034963	(주)이**프** 증	120111- *****	프리즘특목서관학원 (학원등록)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80	114001 2021 01 1 700 035017	골**코**트** 이**엠**	120111- *****	(주)골드코스트에이 치엠씨[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81	114001 2021 01 1 700 035324	배**성	701109- *****	아지트치킨호프[일 반음식점]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82	114001 2021 01 1 700 035434	주**회**제** 온**	120111- *****	인도커리우드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83	114001 2021 01 1 700 035602	(주)평**건** 산**	120111- *****	주식회사 평화건설산업(철근 콘크리트공사업)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84	114001 2021 01 1 700 036178	(주)이**스** 드	120111- *****	(주)이지스가드[건 물위생관리업]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85	114001 2021 01 1 710 036559	(주)위**이**	120111- *****	비료생산업(나-미생 물비료-토양활성제 제)	67,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86	114001 2021 01 1 710 036560	(주)그**그**	120111- *****	그린그린(비료생산 업)	66,53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87	114001 2021 01 1 710 036561	(주)위**이**	120111- *****	비료생산업(가-복합 비료-제4종복합(화 초))	67,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88	114001 2021 01 1 710 036741	임**혁	760912- *****	세계환경(폐기물처 리업(수집·운반업)) 허가번호: 2020-15	54,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89	114001 2021 01 1 710 036815	(주)그**메**	134111- *****	폐기물중간재활용업	54,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90	114001 2021 01 1 710 036964	주**회**나** 실**	120111- *****	(주)나성실업[공장 등록]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91	114001 2021 01 1 710 037004	(주)이**스** 드	120111- *****	(주)이지스가드[경 비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92	114001 2021 01 1 710 037010	와**즈**브** 더** **식**사	120111- *****	와이즈브라더스(주) [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93	114001 2021 01 1 710 037087	제**엔**테** 유**회**	120114- *****	제이엔엘테크[통신 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94	114001 2021 01 1 710 037131	(주)벨**체	120111- *****	주식회사 벨라체(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95	114001 2021 01 1 710 037137	안**민	770110- *****	디에이상사(통신판 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96	114001 2021 01 1 710 037141	계**서	781209- *****	떼떼(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97	114001 2021 01 1 710 037174	박**일	640114- *****	자동주행자동차(통 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98	114001 2021 01 1 710 037183	(주)유**스** 레**	135511- *****	(주)유디스플레이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299	114001 2021 01 1 710 037201	이**섭	721110- *****	아름정공[통신판매 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00	114001 2021 01 1 710 037202	김**민	890717- *****	히스월드 인터내셔널[통신판 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01	114001 2021 01 1 710 037217	이**주	800130- *****	인천에코라이프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02	114001 2021 01 1 710 037224	(주)골**앤**	131111- *****	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03	114001 2021 01 1 710 037293	황**희	640710- *****	나무친구들[통신판 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04	114001 2021 01 1 710 037315	페**런**리	110111- *****	(주)페어런토리[통 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05	114001 2021 01 1 710 037320	주**회** **케**포**	120111- *****	(주)엘케이포유[통 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06	114001 2021 01 1 710 037390	안**성	690518-	에이치와이에브리원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	[통신판매업]		영업소불명
307	114001 2021 01 1 710 037427	김**숙	680217-*****	금단비가(방문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08	114001 2021 01 1 710 037574	(주)엔**스	120111-*****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09	114001 2021 01 1 710 037996	참**원**식**사	121111-*****	챗터원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10	114001 2021 01 1 710 038123	임**숙	480117-*****	형제식당[일반음식점영업]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11	114001 2021 01 1 710 038363	조**식	610208-*****	인천32바1722[여객자동차운송사업]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12	114001 2021 01 1 710 038601	김**흥	720110-*****	삼성지계차서비스(건설기계대여업)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13	114001 2021 01 1 710 038696	(주)참**글**벌**크	110111-*****	티원키즈365 소래물점(의료기기의 판매업)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14	114001 2021 01 1 710 038772	주**회**스**이**리**	120111-*****	(주)스카이코리아[화장품책임판매]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15	114001 2021 01 1 710 038782	주**회**보**	120111-*****	(주)보위[화장품책임판매]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16	114001 2021 01 1 710 038787	주**회**티**리	120111-*****	(주)뷰티트리[화장품제조]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17	114001 2021 01 1 710 038788	주**회**티**리	120111-*****	(주)뷰티트리[화장품책임판매]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18	114001 2021 01 1 710 039124	이**경	680405-*****	논현도어[공장등록]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19	114001 2021 01 1 710 039154	한**장**경**인**회**인**표**화**업**)	254171-*****	한국장애경제인협회 표준화사업장[공장등록]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20	114001 2021 01 1 710 039192	박**제	650527-*****	세일정밀[공장등록]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21	114001 2021 01 1 710 039254	강**천	660101-*****	삼원하이텍[공장등록]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22	114001 2021 01 1 710 039306	(주)그**이**이**스	120111-*****	(주)그린이엔이에스[공장등록]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23	114001 2021 01 1 710 039415	삼**에**에**	120111-*****	(주)삼성에프에스[축산물판매업(우유류판매업)]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24	114001 2021 01 1 710 039580	김**경	900202-*****	유사나헬스사이언스(유)(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25	114001 2021 01 1 710 040060	정**기	800503-*****	세븐일레븐 인천논현현대점(식품자동판매기영업)	18,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26	114001 2021 01 1 710 040260	최**철	561004-*****	실버렉스(폐수)	18,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27	114001 2021 01 1 710 040346	(주)코**게**칼	135511-*****	코반케미칼(폐수배출시설설치)	18,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28	114001 2021 01 1 710 040482	주**회**나**실**	120111-*****	(주)나성실업[대기]	18,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29	114001 2021 01 1 710 040529	최**철	561004-*****	실버렉스(대기)	18,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30	114001 2021 01 1 710 040574	(주)에**로**	120111-*****	(주)에어로플[대기배출시설]	18,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31	114001 2021 01 1 710 040575	(주)에**로**	120111-*****	(주)에어로플[폐수배출시설]	18,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32	114001 2021 01 1 710 040663	오**동	620801-*****	한결전자[대기]	18,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33	114001 2021 01 1 710 040664	조**기	800822-*****	목화산업[대기]	18,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34	114001 2021 01 1 710 040735	주**회**나** 실**	120111- *****	(주)나성실업[약취]	18,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35	114001 2021 01 1 710 040797	(주)위**이**	120111- *****	(주)위드이름(약취배 출시설설치)	18,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36	114001 2021 01 1 710 040859	(주)코**게** 칼	135511- *****	코반케미칼(주) 인천지점(약취배출 시설설치)	18,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37	114001 2021 01 1 710 040947	박**희	741120- *****	박연희헤어홀릭	18,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38	114001 2021 01 1 710 040972	라**덕	930916- *****	인천NASE KOREA[고압가스제조 (총전)]	18,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39	114001 2021 01 1 800 041120	(주)한**포** 기**	120111- *****	(주)한양포장기계[공장등록]	67,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40	114001 2021 01 1 800 041141	김**중	830504- *****	유에치텍[공장등록]	67,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41	114001 2021 01 1 800 041149	주**회**신**	120111- *****	(주)신양[공장등록]	67,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42	114001 2021 01 1 800 041516	마**나**로** 스**미**즈** 리**(주)	161511- *****	마그나클로저스앤미 러즈코리아[공장등 록]	67,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43	114001 2021 01 1 800 041551	(주)시**템** 업	120111- *****	(주)시스템산업[공 장등록]	67,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44	114001 2021 01 1 800 041654	진**글**벌** 드(주)	120111- *****	진승글로벌푸드(주) [공장등록]	67,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45	114001 2021 01 1 800 041719	(주)시**템** 업	120111- *****	(주)시스템산업[공 장등록]	67,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46	114001 2021 01 1 800 041769	(주)신**콘**	110111- *****	(주)신화콘텍[공장 등록]	67,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47	114001 2021 01 1 800 041878	주**회**어** 스**리**프** 비	120111- *****	(주)어니스트리에프 앤비[식품제조업]	54,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48	114001 2021 01 1 800 041991	정**수	550225- *****	미가산업[공장등록]	54,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49	114001 2021 01 1 800 042018	(주)코**게** 칼	135511- *****	코반케미칼[공장등 록]	54,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50	114001 2021 01 1 800 042142	주**회**에** 아**에**인** 내**널	110111- *****	(주)에이아이에스 인터내셔널[공장등 록]	54,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51	114001 2021 01 1 800 042225	두**바**오** (주)	124311- *****	두남바이오택(주)(정수기제조판매:CM- 201PCV)	54,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52	114001 2021 01 1 800 042226	(주)이**스** 드	120111- *****	(주)이지스가드[소 독업]	54,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53	114001 2021 01 1 800 042232	(주)도**선**	120111- *****	자동차의 자기인증을 위한 제자자등의 등록	54,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54	114001 2021 01 1 800 042512	(주)원**포** 머	120111- *****	(주)원진포리너[위 험물저장소설치]	54,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55	114001 2021 01 1 800 042579	주**회**대** 주**건**	120111- *****	(주)대현주택건설[주택건설사업자등록]	54,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56	114001 2021 01 1 800 042833	씨**엘**엠** 식**사	120111- *****	(주)씨엔엘씨엠[공 장등록]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57	114001 2021 01 1 800 042868	(주)세**특** 강	120111- *****	(주)세영특수강[공 장등록]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58	114001 2021 01 1 800 043028	(주)이**시**	120111- *****	(주)이엘시스[공장 등록]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59	114001 2021 01 1 800 043049	김**환	521020- *****	금은산업[공장등록]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60	114001 2021 01 1 800 043052	(주)G*W**이* *크	120111- *****	(주)G-W 하이테크[공장등록]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61	114001 2021 01 1 800 043079	주**회** **들	120111- *****	(주)버들[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62	114001 2021 01 1 800 043105	주**회**미** 컴**니	120111- *****	(주)미광컴퍼니[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63	114001 2021 01 1 800 043132	에**플**스(주)	120111- *****	에어플러스(주)[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64	114001 2021 01 1 800 043215	주**회**다** 트**이**	120111- *****	(주)다빈트레이드(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65	114001 2021 01 1 800 043216	주**회**보**	120111- *****	(주)보위(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66	114001 2021 01 1 800 043233	문**미	800730- *****	두현테크(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67	114001 2021 01 1 800 043243	에**티**스** 식**사	120111- *****	에이티에스(주)(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68	114001 2021 01 1 800 043260	주**회**비**	120111- *****	(주)비손[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69	114001 2021 01 1 800 043293	퓨**캠**리** (주)	120111- *****	퓨전캠코리아(주)(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70	114001 2021 01 1 800 043311	주**회**엘** 디**티	134511- *****	(주)엘씨디엔티(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71	114001 2021 01 1 800 043332	에**폴**오** 식**사	280211- *****	에스폴리오(주)[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72	114001 2021 01 1 800 043389	이**호	840910- *****	나혼자 잘산다[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73	114001 2021 01 1 800 043392	(주)내**럴** 리**	124611- *****	(주)내츄럴코리아[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74	114001 2021 01 1 800 043393	주**회**지** 플**넷	120111- *****	주식회사지원플래넷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75	114001 2021 01 1 800 043395	넬**생**공**	120111- *****	넬스생명공학(주)(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76	114001 2021 01 1 800 043408	(주)대**테** 놀**지	120111- *****	(주)대산테크놀리지(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77	114001 2021 01 1 800 043435	오**근	730615- *****	지앤씨인터네셔널[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78	114001 2021 01 1 800 043480	이**인	651024- *****	서일포장기계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79	114001 2021 01 1 800 043495	보**전**(주)	110111- *****	보영전기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80	114001 2021 01 1 800 043549	두**바**오** (주)	124311- *****	두남바이오텍(주)(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81	114001 2021 01 1 800 043555	송**	135811- *****	(주)송도[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82	114001 2021 01 1 800 043564	허**희	630601- *****	개판양이판[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83	114001 2021 01 1 800 043597	(주)만**무**	176011- *****	통신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84	114001 2021 01 1 800 043704	박**삼	590412- *****	아우토반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85	114001 2021 01 1 800 043968	안**국	511015- *****	영우사[유해화학물질영업(사용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86	114001 2021 01 1 800 044191	주**회**어**	120111- *****	주식회사 어진(식품등수입판매업)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87	114001 2021 01 1 800 044221	(주)장**무**	110111- *****	(주)장인무역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88	114001 2021 01 1 800 044230	티**이**이** (주)	120111- *****	티제이에이치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89	114001 2021 01 1 800 044246	진**글**벌**	120111-	진승글로벌푸드(주)	40,500	수취인, 주소, 거소,

		드(주)	*****	[수입식품판매업]		영업소불명
390	114001 2021 01 1 800 044313	송**래	781027-*****	홀허그타이식당[일반음식점업]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91	114001 2021 01 1 800 044417	진**글**별**드(주)	120111-*****	진승글로벌푸드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92	114001 2021 01 1 800 044433	주**회**아**스**리**프**비	120111-*****	(주)어니스트리에프앤비[식품소분업]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93	114001 2021 01 1 800 044454	진**글**별**드(주)	120111-*****	진승글로벌푸드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94	114001 2021 01 1 800 044544	주**회**휴**린	120111-*****	전문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95	114001 2021 01 1 800 044569	하**건**(주)	120111-*****	하얀건설(도장공사업)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96	114001 2021 01 1 800 044881	씨**엘**엠**식**사	120111-*****	씨엔엘씨엠(주)[화장품책임판매업]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97	114001 2021 01 1 800 044882	씨**엘**엠**식**사	120111-*****	씨엔엘씨엠(주)[화장품제조업]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98	114001 2021 01 1 800 044902	코**앤**	120111-*****	코리앤더(화장품제조업)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399	114001 2021 01 1 800 045051	(주)씨**스**	124611-*****	논현동444-4(도로점용)77㎡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400	114001 2021 01 1 800 045199	(주)프**데**엘**엠	120111-*****	(주)프린테크엘피엠[도로점용:고잔동658-3]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401	114001 2021 01 1 800 045202	(주)신**콘**	110111-*****	(주)신화콘택[도로점용:논현동434-15]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402	114001 2021 01 1 800 045392	에**텍**보**신(주)	110111-*****	에어텍정보통신(주)[공장등록]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403	114001 2021 01 1 800 045393	(주)엠**	110111-*****	(주)엠씨[공장등록]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404	114001 2021 01 1 800 045411	주**회** **르**	120111-*****	(주)푸르르[공장등록]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405	114001 2021 01 1 800 045422	청**데**주**회**	120111-*****	청원테크[공장등록]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406	114001 2021 01 1 800 045432	에**플**스(주)	120111-*****	에어플러스(주)[공장등록]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407	114001 2021 01 1 800 045494	(주)아**마**	120111-*****	(주)아다마스[공장등록]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408	114001 2021 01 1 800 045656	주**회**포**에**씨	120111-*****	포엠에스씨[공장등록]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409	114001 2021 01 1 800 045663	김**현	790209-*****	케이디자이테크[공장등록]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410	114001 2021 01 1 800 045684	웰**스	120111-*****	웰시스[공장등록]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411	114001 2021 01 1 800 045695	(주)티**스**공	120111-*****	(주)티에스정공[공장등록]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412	114001 2021 01 1 800 045698	주**회**마**타**	120111-*****	(주)마스타캠[공장등록]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413	114001 2021 01 1 800 045699	이**훈	720114-*****	에스아이테크[공장등록]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414	114001 2021 01 1 800 045715	노**현	771010-*****	엔디에스텍[공장등록]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415	114001 2021 01 1 800 045756	(주)제**탑	120111-*****	(주)제이탑[공장등록]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416	114001 2021 01 1 800 045830	(주)티**스**공	120111-*****	(주)티에스정공[공장등록]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417	114001 2021 01 1 800 045982	주**회**지**(*T*C*)	110111-*****	(주)지텍[공장등록]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418	114001 2021 01 1 800 046015	김**수	690701-*****	세정테크[공장등록]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419	114001 2021 01 1 800 046039	에**엠**	120111-*****	에스엠피(주)[공장등록]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420	114001 2021 01 1 800 046060	유**옥	520730-*****	대유지엔비[공장등록]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421	114001 2021 01 1 800 046142	안**국	511015-*****	영우사[공장등록]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422	114001 2021 01 1 800 046316	세**테**주**회**	120111-*****	(주)세광테크[공장등록]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423	114001 2021 01 1 800 046389	최**석	640706-*****	정진폴리머[공장등록]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424	114001 2021 01 1 800 046432	주**회**에**차**레**	120111-*****	(주)에이치프레스[공장등록]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425	114001 2021 01 1 800 046488	(주)클**우**게**트	110111-*****	(주)클라우드게이트[공장등록]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426	114001 2021 01 1 800 046498	(주)클**우**메**닉**	120111-*****	(주)클라우드메카닉스[공장등록]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427	114001 2021 01 1 800 046502	최**철	561004-*****	실버렉스[공장등록]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428	114001 2021 01 1 800 046567	홍**영	791212-*****	씨엔에스테크[공장등록]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429	114001 2021 01 1 800 046593	(주)세**메**텍	120111-*****	(주)세일메드텍[공장등록]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430	114001 2021 01 1 800 046598	(주)그**테**	120111-*****	(주)그린테크[공장등록]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431	114001 2021 01 1 800 046710	에**티**스**식**사	120111-*****	(주)에이티에스[공장등록]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432	114001 2021 01 1 800 046715	주**회**어**	120111-*****	(주)어진[공장등록]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433	114001 2021 01 1 800 046746	주**회**휴**린	120111-*****	(주)휴그린[공장등록]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434	114001 2021 01 1 800 046772	세**산**	124311-*****	세우산전(주)인천지점[공장등록]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435	114001 2021 01 1 800 046780	(주)룩**인	120111-*****	(주)룩스인[공장등록]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436	114001 2021 01 1 800 046895	지**디**렉** (주)	120111-*****	지오디플렉스(주)[공장등록]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437	114001 2021 01 1 800 046924	주**회**동**씨**트	170111-*****	(주)동우씨킷트 안산지점[공장등록]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438	114001 2021 01 1 800 046926	(주)우**솔**션	211111-*****	(주)우영솔루션[공장등록]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439	114001 2021 01 1 800 046942	주**회**네**네**엘**디**이**	120111-*****	(주)네오네온엘이디 라이팅[공장등록]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440	114001 2021 01 1 800 046972	(주)남**피**비	120111-*****	(주)남동피씨비[공장등록]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441	114001 2021 01 1 800 047211	김**식	591029-*****	진영정공[공장등록]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442	114001 2021 01 1 800 047218	김**식	600503-*****	이천중전기[공장등록]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443	114001 2021 01 1 800 047313	(주)파**디**플**이	120111-*****	(주)파인디스플레이[공장등록]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444	114001 2021 01 1 800 047642	(주)밀**언**	120111-*****	(주)밀리언텍[공장등록]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445	114001 2021 01 1 800 047657	주**수	750209-*****	하나산업[공장등록]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446	114001 2021 01 1 800 047658	이**캠**	151111-	이피캠텍(주)[공장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식사	*****	등록]		영업소불명
447	114001 2021 01 1 800 047680	송**	135811-*****	(주)송도[공장등록]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448	114001 2021 01 1 800 047691	청**씨**이	120111-*****	(주)청진씨제이[공장등록]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449	114001 2021 01 1 800 047725	엘**원	110111-*****	(주)엘리원[공장등록]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450	114001 2021 01 1 800 047750	유**에**엠	120111-*****	(주)유진에스엠[공장등록]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451	114001 2021 01 1 800 047819	황**식	691011-*****	석영통상[공장등록]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452	114001 2021 01 1 800 047984	미**정**산**	135511-*****	미래정보산업[공장등록]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453	114001 2021 01 1 800 048101	주**회**휴**린	120111-*****	(주)휴그린(옥외광고업)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454	114001 2021 01 1 800 048201	(주)이**엠	120111-*****	이원엠(방사선발생장치사용)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455	114001 2021 01 1 800 048203	(주)제**탑	120111-*****	(주)제이탑(방사선발생장치 사용판매)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456	114001 2021 01 1 800 048258	김**희	790207-*****	다올공인중개사사무소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457	114001 2021 01 1 800 048341	클**너**	120111-*****	(주)클리너스[건물위생관리업]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458	114001 2021 01 1 800 048403	(주)한**케**링	120111-*****	(주)한성케터링세일전자점[위탁급식]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459	114001 2021 01 1 800 048461	나**산**안**주**회**	110111-*****	나사산업(주)(인천인력개발원점)_위탁급식영업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460	114001 2021 01 1 800 048933	(주)한**	110111-*****	(주)한신(집단급식소)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461	114001 2021 01 1 800 048974	합**회**삼**노**법**	120112-*****	(합)삼화노무법인(보험사무대행인가)	27,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462	114001 2021 01 1 800 049110	주**회**디**파**	120111-*****	(주)디오파츠(폐수배출시설설치)	18,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463	114001 2021 01 1 800 049180	루**	134811-*****	(주)루벤인천지점[폐수]	18,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464	114001 2021 01 1 800 049198	모**화**스**틱	134511-*****	폐수배출시설	18,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465	114001 2021 01 1 800 049278	최**호	490202-*****	엘시엠제약(폐수배출시설 설치)	18,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466	114001 2021 01 1 800 049393	에**플**오**식**사	280211-*****	에스폴리오(주)(폐수)	18,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467	114001 2021 01 1 800 049573	(주)남**파**비	120111-*****	폐수배출시설 설치	18,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468	114001 2021 01 1 800 049626	(주)이**엠	120111-*****	(주)이원엠	18,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469	114001 2021 01 1 800 049822	김**웅	440125-*****	일신기계[폐수배출처리시설]	18,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470	114001 2021 01 1 800 049829	(주)경**자**차**품	120111-*****	(주)경인자동차부품[폐수배출처리시설]	18,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471	114001 2021 01 1 800 049973	주**회**디**파**	120111-*****	(주)디오파츠(대기배출시설설치)	18,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472	114001 2021 01 1 800 050038	주**회**신**	120111-*****	신양(대기배출시설)	18,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473	114001 2021 01 1 800 050105	(주)가**	120111-*****	대기오염배출시설 설치	18,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474	114001 2021 01 1 800 050201	청**씨**이	120111-*****	(주)청진씨제이[대기오염배출시설]	18,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475	114001 2021 01 1 800 050506	(주)남**피**비	120111-*****	대기오염배출시설 설치	18,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476	114001 2021 01 1 800 050528	(주)이**엠	120111-*****	(주)이원엠	18,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477	114001 2021 01 1 800 050776	(주)말**언**	120111-*****	(주)밀리언텍[대기오염배출시설]	18,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478	114001 2021 01 1 800 050822	(주)우**이**지	120111-*****	(주)우진이엔지(악취배출시설)	18,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479	114001 2021 01 1 800 051094	(주)이**엠	120111-*****	(주)이원엠(악취배출시설설치)	18,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480	114001 2021 01 1 800 051169	주**회**신**	120111-*****	(주)신양	18,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481	114001 2021 01 1 800 051200	(주)인**그**퍼**처**점	124611-*****	(주)인테그랄퍼니처지점, 악취배출시설	18,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482	114001 2021 01 1 800 051206	(주)가**	120111-*****	(주)가담(고잔동78B-1L, 악취)	18,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483	114001 2021 01 1 800 051208	(주)힐**론	120111-*****	(주)힐트론(악취)	18,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484	114001 2021 01 1 800 051249	(주)대**테**놀**지	120111-*****	(주)대산테크놀로지(악취배출시설설치)	18,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485	114001 2021 01 1 800 051331	티**이**이** (주)	120111-*****	티제이에이치(주)(악취배출시설설치)	18,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486	114001 2021 01 1 800 051344	(주)남**피**비	120111-*****	(주)남동피씨비(악취배출시설설치)	18,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487	114001 2021 01 1 800 051694	(주)에**로**	120111-*****	(주)에이로플(악취배출시설)	18,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488	114001 2021 01 1 800 051736	최**목	640503-*****	서일테크(악취배출시설)	18,0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279호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관내 무단방치 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자진처리 명령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및 부재 무단전출 수취인불명 소유자 미상 이사 등으로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1년 2월 3일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명 :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1.2.3. ~ 2021.2.17.
3. 공고대상 : 49로1678외 7대
4. 공고내용

가. 본 공고기간 만료시까지 자동차를 자진처리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에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에도 범칙금이 20~30만원이 부과되며 기한 내 자진처리를 이행치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로 범칙금 100~150만원이 부과 됩니다.

나. 위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 법 제 88조 규정에 의하여 방치행위자로 검찰로 송치되어 동법 제81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처리명령을 이행치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도 강제처리 됩니다.

자진처리명령서 반송 내역서

연번	접수 번호	차량등 등록 번호	차명	방치장소 (인천광역시남동구)	수취인 명	주 소	발송일자 (1,2차)	미배달사 유	견인일 자	보관장소	연락처	비고
1	2020-00551	49로1678	A8 LWB 4.2 FSI quattro	남동구 논현고잔로128번길 66 태안모터스 인천서비스	주식회사 금**설로**리아	경기도 부천시 길***7번길 1*-2* **2호(*동, 광**라자)	2020.12.21. 2021.1.12.	배달배달	2020.12.10.	(주)인천폐차사업소	032-814-7077	
2	2020-00572	91다7625	포터II(PO RTERII)	남동구 논현동 672-5 건너편	대**업(주)	경기도 부천시 부*로 4** 포**빌딩 **8호(심*동)	2020.12.21. 2021.1.12.	수취인불명 수취인불명	2020.12.14.	(주)인천폐차사업소	032-814-7077	
3	2020-00574	83서1921	다마스벤	남동구 논현동 672-5 건너편	알***통주식회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로 **6, *층(논*동)	2020.12.21. 2021.1.12.	수취인불명 기타	2020.12.15.	(주)인천폐차사업소	032-814-7077	
4	2020-00575	88조7877	다마스벤	남동구 논현동 672-5 건너편	알***통주식회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로 **6, *층(논*동)	2020.12.21. 2021.1.12.	수취인불명 기타	2020.12.15.	(주)인천폐차사업소	032-814-7077	
5	2020-00589	04보6323	아반떼오토 메틱	남동구 서창동 552-5 공영주차장 안	권*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새***6번길 *-8, **1호(연*동)	2020.12.23. 2021.1.12.	폐문부재 폐문부재	2020.12.17.	(주)인천폐차사업소	032-814-7077	
6	2020-00590	인천33나9716	크레도스	남동구 만수동 1038 (삼익아파트와 현대아파트 사이 도로)	박*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0번길 **6, **1호(관*동)	2020.12.23. 2021.1.12.	배달배달	2020.12.15.	기전산업(주)폐차사업소	032-814-4400	
7	2020-00591	34무2380	쏘나타 (SONATA)	남동구 만수동 1038 (삼익아파트와 현대아파트 사이 도로)	이*훈	경기도 부천시 조***9번길 *0 (원*동)	2020.12.23. 2021.1.12.	기타 기타	2020.12.15.	기전산업(주)폐차사업소	032-814-4400	
8	2020-00605	경기43가4475	스펙트라윙	남동구 만수동 946-29 앞 태광빌라 다동 앞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0번길 2*, *동 **2호(만*동, 삼**라)	2020.12.31. 2021.1.19.	기타 기타	2020.12.25.	기전산업(주)폐차사업소	032-814-4400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287호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에 따른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남동구 관내에 무단방치 된 차량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강제처리 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게시판, 시·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4일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기 간 : 2021.2.4. ~ 2021.2.18.
2. 강제처리(폐차) 일시 : 공고이후
3. 강제처리(폐차) 장소 : 남동구 관허 폐차장
4. 이해관계인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 33모8748외 1대
5.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무단방치 자동차의 이해관계인(저당권자, 압류권자)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 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종료까지 권리행사가 없을 시 그 권리를 포기함으로 간주하여 강제처리(폐차)할 예정입니다.
6. 기타사항: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도 강제처리 됩니다.
7. 문 의 처: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 무단방치담당(☎ 032-453-2822)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폐차)처리대상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내역

접수 번호	차량등록 번호	차명	소유주	생년월일	사용본거지	구분	채권자/축탁기관/단속부서	등록일자	저당가액/ 공문번호/ 단속공무원	압류내역/ 영치내역
2020-00370	33모8748	아반떼 쿠페 (AVANTE COUPE)	김*빈	99****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로 1* ***1호(십*동, 대***빌)	저당	와이앤케이파트너스대부주식회 사 *저당을부번호 : 5014-2018-041912	2018.02.19	7,450,000	
2020-00514	53버1877	아반떼(AVANTE)	한*수	5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승*길 1*, **1호(문*동, 현**선)	저당	동양생명 *저당을부번호 : 2824-2010-005185	2010.08.23	12,000,000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1-10호

남동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월 29일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불공정 무역구조로 발생하는 경제적 불평등 등의 문제 해결 및 공정 무역의 올바른 인식 확산
- 윤리적이고 투명하며 공정한 무역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은 물론 공정무역을 지원 · 육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정 목적, 정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기본원칙 및 구청장 책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5조)
- 공정무역 활성화 추진계획 및 지원범위 규정(안 제6조, 제7조)
- 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9조)
-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1. 1. 29. ~ 2. 4.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황규진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414
----------	------

발의년월일 : 2021년 1월 27일

발 의 자 : 황규진 의원

찬 성 자 : 유광희 의원 외 4명

☐ 제안이유

- 불공정 무역구조로 발생하는 경제적 불평등 등의 문제 해결 및 공정무역의 올바른 인식 확산
- 윤리적이고 투명하며 공정한 무역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은 물론 공정무역을 지원 · 육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정 목적, 정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기본원칙 및 구청장 책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5조)
- 공정무역 활성화 추진계획 및 지원범위 규정(안 제6조, 제7조)
- 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9조)
-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본 문 : “별첨”

☐ 신 · 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9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무역을 지원·육성하고 구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무역”이란 국제무역에서 보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고 저개발국가의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나은 거래 조건을 제공하며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을 말한다.
2. “공정무역단체”란 공정무역과 관련된 사업을 기반으로 공정무역을 올바르게 알리고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을 말한다.
3. “공정무역제품”이란 공정무역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공정무역단체가 개발하거나 유통하는 재화와 용역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1. 공정무역 이해관계자 상호 간의 신뢰와 존중을 제고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 구축
2. 공정무역운동 활성화를 위한 구민의 자발적 참여 장려 및 민·관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
3. 공정무역제품 소비 촉진을 위한 공정무역제품 구매 접근성 제고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중심이 되는

공정무역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공정무역사업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정무역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공정무역사업의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공정무역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공정무역 민·관 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정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정무역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범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정무역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정무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
2. 공정무역제품 판매처 발굴 및 지원 사업
3. 공정무역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사업
4. 그 밖에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공정무역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공정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추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 자문 및 심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남동구 의회의원
 2. 공정무역 업무 담당국장
 3. 공정무역단체에서 추천받은 사람
 4. 공정무역 관련 전문가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공정무역 활성화 및 정책 수립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 일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정 무역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구매촉진 등)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정 무역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정무역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민간기관 및 단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공정무역단체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공정무역제품 판매처 지원과 공정무역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공정무역제품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작성자 : 정책기획국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무역을 지원·육성하고 구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무역”이란 대화와 투명성, 존중에 기초하여 국제무역에서 보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거래 기반의 동반자 관계로서, 특히 저개발국가에서 경제발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나은 거래 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을 말한다.
2. “공정무역단체”란 공정무역제품을 취급하거나 공정무역을 올바르게 알리고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3. “공정무역제품”이란 공정무역단체가 개발·유통하는 재화 및 용역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1. 공정무역 이해관계자 상호 간의 신뢰와 존중을 제고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 구축
2. 공정무역운동 활성화를 위한 구민의 자발적 참여 장려 및 민·관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

3. 공정무역 제품 소비 촉진을 위한 공정무역제품 구매 접근성 제고

제4조(공정무역 활성화 추진계획)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무역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무역의 현황과 전망
2.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방향
3. 공정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4. 공정무역 민·관 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공정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범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5.>

1. 공정무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
2. 공정무역의 마케팅 사업
3. 공정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캠페인 사업
4. 공정무역 발전을 위한 국내외 교류 사업
5. 공정무역 홍보 및 활성화 사업 활동참여자 지원 <신설 2019. 3. 15.>[종전의 제5호는 제6호로 이동 <2019. 3. 15.>]
6. 그 밖에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5호에서 이동 <2019. 3. 15.>

제6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공정무역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정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공정무역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2. 공정무역 지원 단체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정무역 관련 홍보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정무역 사업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1명
2. 공정무역 담당 국장
3. 공정무역 관련 단체에서 추천받은 사람
4. 공정무역 관련 전문가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대학교수, 연구원, 전문가 등)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정무역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촉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계가 있었거나 있는 경우
 3.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 ④ 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2(회의록)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9. 3. 15.>

제12조(공정무역제품 구매촉진 등)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정무역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정무역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민간기관 및 단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공정무역단체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1-11호

남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남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월 29일

남동구의회의장

1. 제안이유

-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육성·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지원계획 수립 등 (안 제4조)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안 제5조)
- 사무의 위탁 (안 제6조)
-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품 우선구매 (안 제7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1. 1. 29. ~ 2. 4.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김안나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415
----------	------

제출년월일 : 2021년 1월 27일

발 의 자 : 김안나 의원

찬 성 자 : 반미선 의원 외 2명

☐ 제안이유

-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육성·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지원계획 수립 등 (안 제4조)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안 제5조)
- 사무의 위탁 (안 제6조)
-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품 우선구매 (안 제7조)

☐ 본 문 : “별첨”

☐ 신 · 구조문대비표 : “없음”

☐ 참고자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제15조의2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육성·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문화예술을 말한다.
3. “장애인 문화예술단체”란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조직한 구 관내에 소재한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권장·보호·육성하여야 하며, 그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장

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적절한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2.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활동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

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품 우선구매) 구청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남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제5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에 따른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남동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거 문화예술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관내 예술인 및 단체 (장애인 문화예술인 및 단체 포함)를 지원하고 있으며, 각 분야별 (전시, 발간, 문화행사, 공연 등) 사업 규모 및 특성,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심의 후 지원되는 사항으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 될 것으로 사료됨.

작성자 : 자치행정국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참고자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5. 27., 2015. 6. 22., 2017. 2. 8.>

② 삭제 <2017. 2. 8.>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2. 8., 2017. 12. 19.>

④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7. 12. 19.>

⑤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2015. 6. 22., 2015. 12. 29., 2017. 12. 19.>

⑦ 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그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2017. 2. 8.>

⑧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5. 27., 2015. 12. 29., 2017. 2. 8.>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17., 2013. 7. 16., 2016. 12. 20., 2018. 6. 12., 2020. 12. 22.>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제15조의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사업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 1. 17.]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1-12호

남동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 29.

남동구의회의장

1. 제안이유

-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사업비를 표지판에 의무적으로 명기함으로써, 구민들의 알권리를 신장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건립비용 공개 원칙 규정(안 제3조)
- 공개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유지 및 관리비용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1. 1. 29. ~ 2. 4.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4일까지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416
----------	------

발의년월일 : 2021년 1월 27일

발 의 자 : 김안나 의원

찬 성 자 : 반미선 의원 외2명

☐ 제안이유

-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사업비를 표지판에 의무적으로 명기함으로써, 구민들의 알권리를 신장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건립비용 공개 원칙 규정(안 제3조)
- 공개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유지 및 관리비용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본 문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참고자료

-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 공개 조례」

남동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공공시설”이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 시설, 문화·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

나. “공공건축물”이란 구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구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

2. “표지판”이란 공공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동판, 석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3.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 등을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3조(건립비용 공개 원칙) 남동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공공시설 등을 건립할 때에는 구민들이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등에 건립비용을 명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공개 대상) 건립비용 공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공건축물

2. 10억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드는 공공시설

제5조(공개 방법 및 내용) ① 공공시설 등의 표지판에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건립비용

②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은 당해 공공시설 등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한다.

제6조(유지 및 관리비용 공개) 구청장은 제4조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등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지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해당함.

⇒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미첨부 사유

- 「건설산업 기본법」 제42조(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건설공사표지 등)에 따라 “건설공사 표지”를 설치하도록 기 시행중임.
- 법률에 따라 기시행중인 표지판에 “건립비용”에 관한 항목을 추가하는 목적의 조례이므로 별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

[참 고

작성자 : 재정경제국 재무과장 강 필 모

자료]

□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①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적은 표지를 건설공사 현장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 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표지의 게시 비용 및 표지판의 설치 비용을 해당 건설공사의 공사 비용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2조(건설공사표지 등) ①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현장에 게시하여야 하는 표지는 별표 4와 같다.

②법 제42조 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영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에서 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③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표지판은 석재 또는 금속 등을 사용한 영구적인 시설물로 설치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자의 성명(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성명·기술자격종목 및 등급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 공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국민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시설, 문화·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

나. “공공건축물”이란 구와 구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구민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

2. “표지판”이란 공공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동판, 석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3.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 등을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3조(건립비용 공개 원칙)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등을 건립할 때에는 구민들이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 로 하여금 표지판에 건립비용을 명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공개 범위)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 공개 대상은 10억 원 이상의 건립 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 등으로 하며, 건립비용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구 분하거나 합산하여 명기할 수 있다.

제5조(공개 방법 및 내용) ① 표지판에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을 명기하는 범 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건립비용

②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은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설 치한다.

제6조(유지·관리비용 공개) 구청장은 제4조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등 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4조 및 제5조 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지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1-13호

남동구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남동구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월 29일

남동구의회의장

1. 제안이유

- 법령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대상,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4조)
- 근로자 권리보호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제11조)
- 근로자의 권익 보호 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6조)
- 근로자 권익 보호 전담기관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1. 1. 29. ~ 2. 4.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신동섭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417
----------	------

발의년월일 : 2021년 1월 27일
발 의 자 : 신동섭 의원
찬 성 자 : 김안나 의원 외 3명

☐ 제안이유

-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대상,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4조)
- 근로자 권리보호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제11조)
- 근로자의 권익 보호 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6조)
- 근로자 권익 보호 전담기관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 참 고 자 료

- 「근로기준법」 제2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남동구 지역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근로자 및 사용자와 구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와 사용자로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근로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근로자가 생명과 건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근로자 권리보호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비정규직 및 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근로자를 비롯한 일반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자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5. 그 밖에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구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점검 및 평가)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 및 운영) 구청장은 근로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및 노동관계법령 안내 등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과 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 및 근로자가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교육기관과 시설 등의 노동법 교육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③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의 장은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직원이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근로복지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
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
절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
한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남동구 근로자 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자문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자문
3. 근로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발 및 운영에 대한 자문

제1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재정경제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남동구의회의 의원
2. 노동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노동 분야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국제기구에서의 근무 등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관련 업무 담당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⑤ 그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5조(위원 임기)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7조(근로자 권익보호 전담기관 설치) ① 구청장은 노동정책 시행계획과 근로자 권리 및 인권 보호를 위하여 근로자 권익보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담기관에 노동 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노동 관련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의 운영에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제6조(근로자 권리보호 기본계획), 제11조(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지원)등의 규정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비용 발생 예상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조례안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되어 있고, 각종 시책·지원 사업 등이 확정되지 않아 현재 시점에서 비용을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향후 사업추진 등에 소요되는 직·간접 추이 비용이 발생할 시기에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 추계하여 추진하겠음

작성자 : 재정경제국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참고자료]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생략

□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① 근로복지(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정책은 근로자의 경제·사회활동의 참여 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근로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근로자가 성별, 나이,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배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을 할 때에는 중소기업 근로자, 기간제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단시간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파견근로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수급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말한다)이 고용하는 근로자, 저소득근로자 및 장기근속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제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제3조의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기금·세제·금융상의 지원을 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勞務)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개정 2010. 1.

27., 2020. 5. 26.>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제4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7.>

③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 법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처음 이 법의 적용을 받은 날부터 70일 이내에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처음 이 법의 적용을 받은 날로 소급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시 이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공단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0. 5. 26.>

⑦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및 변경, 법 적용 제외 및 재적용의 신청, 보험료의 산정·신고·납부,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 6. 4.>

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사유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제9항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가 보험료 체납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⑪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 1. 27., 2010. 6. 4.>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1-14호

남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남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월 29일

남동구의회의장

1. 제안이유

- 동물보호에 대한 조례를 통합하여 체계적인 동물 보호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민관의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여 인간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2조)
- 동물보호 계획 수립(안 제6조)
- 동물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8조, 9조)
-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안 제11조~제13조)
- 예산지원 및 표창(안 제17조, 18조)
- 남동구 유기, 유실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폐지(부칙)

3. 입법예고 기간 : 2021. 1. 29. ~ 2. 4.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정순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419
----------	------

발의년월일 : 2021년 1월 28 일

발 의 자 : 이정순 의원

찬 성 자 : 반미선 의원 외 3명

☐ 제안이유

- 동물보호에 대한 조례를 통합하여 체계적인 동물 보호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민관의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여 인간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2조)
- 동물보호 계획 수립(안 제6조)
- 동물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8조, 9조)
-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안 제11조~제13조)
- 예산지원 및 표창(안 제17조, 18조)
- 남동구 유기, 유실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폐지(부칙)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 참 고 자 료

- 「동물보호법」
-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만들기 조례」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남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및 구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가정에서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 보호”란 반려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는 등,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규정에 의한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적절한 사육·관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나. 제1호에 따른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4. “반려동물 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없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유실·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동물이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6. “피학대 동물”이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을 말한다.
7. “보호조치”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함에 있어 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8. “동물보호센터”(이하 “보호센터”라 한다)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 또는 위탁계약에 의하여 유기동물 보호를 위탁받은 자(이하 “위탁보호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9.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10.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의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관련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물론 키우지 않는 사람을 위한 권리와 쾌적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참여와 협력) 구민은 구의 반려동물 보호 정책 시행과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 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관리 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관리하고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스트레스·갈증·배고픔·영양불량·부상·질병·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등록 및 외출 시 안전조치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반려동물을 유기해서는 안된다.

제6조(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연간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구조·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등록대상동물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사항

제7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 등은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구청장 또는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각 호의 자 중 구청장이 지정한 자(이하 “동물등록대행자”라 한다)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 또는 동물등록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 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하며, 동물등록대행자는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한 후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동물등록대행자로부터 등록사항이 통보되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5일 이내에 소유자 등에게 동물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동물보호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남동구 동물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동물보호 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동물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3.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4. 동물복지,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업무 부서의 장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법 제4조제4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남동구의회 의원
4.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
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서 동물보호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단체 또는 기구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동물보호에 대한 연구 및 활동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에 관심이 많은 사람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포획,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위탁보호자가 유기동물을 포획, 구조할 때에는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유기동물의 보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도로,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유기동물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포획한 유기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센터를 설치 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1. 동물병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하는 동물보호소
3. 축산 또는 수의과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동물보호단체

②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보호한 동물의 종류, 성별, 연령, 특징, 포획장소, 포획시간, 보호장소 등을 그 동물의 소유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7일 이상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포획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조에 따른 수의사 또는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사(이하 “공수의”라 한다)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진료결과 인수공통전염병 또는 법정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동물에 대하여는 살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그 동물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분양 또는 기증을 하는 경우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으로 분양하고, 중성화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유기동물의 반환 등) ① 구청장은 유기동물의 소유자 등이 공고기간 내에 유기동물의 반환을 요구 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탁보호시설 및 단체에 유기동물의 보호·관리에 소요된 경비를 구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경비의 산출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반환하는 경우 소유자 등에게 유기동물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의 상당액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보호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유기동물의 보호·관리의 임무를 게을리 하거나 임무수행능력 이 없을 때
2. 보호업무에 관한 구청장의 지시에 위반하였을 때
3.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인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제14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동물 보호,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및 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대학·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반려문화 조성)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

제16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주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예산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에 관한 교육·홍보
2. 유기동물 보호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에 필요한 사항

제18조(표창) ① 구청장은 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공적이 뚜렷한 주민

또는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에 필요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보호 중에 있는 유기동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동물보호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 남동구 유기·유실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별표]

소요경비 산출기준표 (제12조 관련)

1. 사료 등 급여 기준

동물명	규 격	사료급여기준(1마리/1일)
개, 고양이	6개월령 이하	습식 또는 건식으로 250kcal/kg
	6개월령 초과	습식 또는 건식으로 100kcal/kg
기 타	-	동물의 생태에 따라 보호센터장이 정함

비고 : ① 위의 기준표를 적용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리인 또는 보호업무를 위탁받은 자와 협의하여 사료의 종류와 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기타의 동물에 대한 사료급여 기준은 필요한 경우에 구청장이 별도 고시할 수 있다.

③ 사료첨가제, 식염, 기타의 무기물 등은 동물의 건강상태에 따라 충분한 양을

급여한다.

2. 소요경비 지급

- ① 포획비 : 정부노임단가 기준 중 제조부문 안전관리사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 ② 보호·관리비 : 정부노임단가 기준 중 제조부문 안전관리사 노임액의 20/100이내로 지급한다.
- ③ 치료비 : 부상 등 치료를 하였을 경우 보호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인근 동물병원 진료수가에 따른다.
- ④ 사료비 : 위 기준표에 의하여 급여한 사료량의 시중 판매가격으로 한다.

3. 그 밖의 비용

- ① 수송비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포획지역의 일반화물자동차 운임 및 요금을 적용한다.
- ② 인도적 처리비(마취, 심박동정지) : 인도적 처리에 소요된 실비를 지급한다.
- ③ 사체처리비 : 사체처리에 소요된 특정 폐기물 처리비용에 따른다.
-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산출경비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4. 기 타

위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때에는 구청장과 위탁받은 자의 협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조례 제17조에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에 관한 교육·홍보, 유기동물 보호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반려동물 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2. 미첨부 근거 규정

[참고
자료]



동 물
보 호
법

제 4 조
(국
가 ·
지 방
자 치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해당

3. 미첨부 사유

○ 조례 제17조에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에 관한 교육·홍보, 유기동물 보호 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반려동물 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작성자 : 재정경제국 농축수산과장 김미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침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이하 “유실·유기동물”이라 한다)

나.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이하 “피학대 동물”이라 한다)

3.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제25조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동물학대 방지, 동물복지, 유실·유기동물의 입양 및 동물실험윤리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축산의 확대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동물학대 방지와 반려동물 운동·휴식시설 등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 3. 21.>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의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⑤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8. 3. 20.>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1.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2.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③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중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실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그 사실을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동물등록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2. 11.>

⑤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사항 및 방법·절차, 변경신고 절차, 동물등록대행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며,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1.>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연락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③ 시·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실·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7조(공고)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7조에 따라 동물 보호조치에 관한 공고를 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시스템(이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보호 공문을 작성하여 다른 방법으로 게시하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그 내용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3. 20.>

②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개체관리카드와 보호동물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3. 20.>

제8조(보호비용의 징수)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비용을 징수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징수 통지서를 동물의 소유자 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분양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3. 20.>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동물등록 신청서(변경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1., 2017. 1. 25., 2017. 7. 3., 2019. 3. 21.>

② 제1항에 따라 동물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별표 2의 동물등록번호의 부여방법 등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 또는 인식표를 장착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을 발급하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등록사항을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4.>

③ 동물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는 등의 이유로 동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3., 2019. 3. 21.>

④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등록하려는 동물이 영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등록대상 월령(月齡) 이하인 경우에도 등록할 수 있다. <신설 2019. 3. 21.>

제10조(등록업무의 대행) ① 법 제12조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 3. 21., 2020. 8. 21.>

1.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4.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동물판매업자
5. 법 제1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이하 “동물보호센터”라 한다)

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

는 자(이하 이 조에서 “동물등록대행자”라 한다)는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등 외과적 시술이 필요한 행위는 소속 수의사(지정된 자가 수의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1., 2020. 8. 21.>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 내에 있는 모든 동물등록대행자에 대하여 해당 동물등록대행자가 판매하는 무선식별장치의 제품명과 판매가격을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게재하게 하고 해당 영업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31.>

□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조례

제5조(반려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보호 및 복지 주관부서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반려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구 단위의 복지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구 단위의 복지시행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
3. 보호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보호 및 복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수의사로서 보호 및 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법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4. 법 제41조에 따른 보호명예감시원으로서 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서 보호연구 경험이 있거나 보호단체 또는 기구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보호에 대한 연구 및 활동 경험이 있거나 보호에 관심이 많은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

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 중 보호 및 복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의록) ①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 및 성명
3. 자문 안건과 자문 내용

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호 및 복지 담당주사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1-15호

남동구의회 표창 조례안

『남동구의회 표창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월 29일

남동구의회의장

1. 제안이유

- 남동구의회 표창에 대한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표창 상신 및 수여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표창대상 및 종류(안 제2조 ~ 제9조)
- 대상자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제14조)
-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한 사항(부칙 제2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1. 1. 29. ~ 2. 3.(5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동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팀)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151,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의회 표창 조례안 (강경숙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420
----------	------

발의년월일 : 2021년 1월 29일
발 의 자 : 강경숙 의원
찬 성 자 : 신동섭 의원 외 4명

☐ 제안이유

- 남동구의회 표창에 대한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표창 상신 및 수여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표창대상 및 종류(안 제2조 ~제9조)
- 대상자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4조)
-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한 사항(부칙 제2조)

☐ 본 문 : “별첨”

☐ 신 · 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 참고자료

-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8장 포상
- 「남동구 표창 조례」
- 「남동구의회 표창 규정」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의회 표창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표창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의회활동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이 큰 공무원,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기관 및 단체에 수여한다.

제3조(표창의 종류) 표창은 표창장, 감사장 및 감사패, 공로패, 기념패, 상장으로 구분한다.

제4조(표창권자) 표창은 남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다만, 기념패는 “의원일동” 명의로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의정활동에 적극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3.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공이 있는 경우

제6조(감사장 및 감사패) 감사장 및 감사패는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협조·지원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성을 떨친 경우에 수여한다.

제7조(공로패) 공로패는 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의회운영 및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수여한다.

제8조(기념패) 기념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시 그 활동 및 업적을 기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의원이 의회를 대표하여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을 방문하는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9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학술·예술·체육·그 밖의 각종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2.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3. 각종 품평회·경진대회·전시회 등에 입상한 경우

제10조(표창방법 및 특전) ① 표창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에 의하여 수여한다.

② 제1항의 표창을 할 때에는 상패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표창의 시기) 표창은 표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제12조(대상자 추천) ① 표창대상자의 추천권자는 단체장 및 기관장, 또는 구의원,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표창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추천서,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의장표창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표창수여 예정일 10일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제13조(의회공적심사위원회)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에 의회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의회사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홍보담당이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공적심사) ① 표창 중 표창장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구청장 등 각급 기관장이 추천한 경우와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표창대상자를 결정하는데 있어,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5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2년 이내의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6조(표창대장) ① 표창수상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표창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표창의 발급번호는 표창 종류의 구분 없이 일련번호를 매긴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48조부터 제58조까지를 삭제한다.

②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의 별지 제4호서식부터 제12호서식까지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표창장

제 호

의회문장

표 창 장

주소 또는 소속

성 명

본문.....

.....

년 월 일

남 동 구 의 회 의 장 ○ ○ ○ 인

[별지 제2호서식] 감사장

제 호

의회문장

감 사 장(패)

주소 또는 소속

성 명

본문

.....

년 월 일

남 동 구 의 회 의 장 ○ ○ ○ 인

[별지 제3호서식] 공로패

제 호

의회문장
공 로 패

주소 또는 소속
성 명

본문
.....

년 월 일

남 동 구 의 회 의 장 ○ ○ ○ 인

[별지 제4호서식] 기념패

제 호

의회문장
기 념 패

주소 또는 소속
성 명

본문
.....

년 월 일

남 동 구 의 회 의 장 ○ ○ ○ 인

[별지 제5호서식] 상장

제 호

의회문장
상 장

주소 또는 소속
성 명

본문
.....

년 월 일

남 동 구 의 회 의 장 ○ ○ ○ 인

[별지 제6호서식] 표창추천서

표 창 추 천 서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직 급		근무기간	년 월
추천훈격		추천순위	
추천사유			
1. 2. 3. 4. 5. ※첨부 : 공적조서, 의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각 1부			
추 천 인			
소 속	직 위(급)	성 명	
		(인)	
		(인)	
		(인)	
년 월 일 남동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공적조서

공 적 조 서

(앞면)

※ 전산처리하므로 해당코드(상훈사무 실무지침 참조)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1)성 명	(한자)															
(2)생년월일								(3)군번(군인의 경우)								
(4)국적(외국인에 한함)																
(5)주 소																
(6)직 업		(7)소 속														
(8)직 위		(9)등급(직급·계급)						(10)근무기간 (수공기간)								
(11)공적요지(50자 이내)				(12)공적분야코드												
(13)추천훈격								(14)추천순위								
조 사 자																
(15)소 속								(1 6) 직 위								
(17)직 급								(1 8)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뒷면)

주요 학 력 및 경 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년 월 일	(22) 이 력

과거포상기록(훈장·표창별로 기록)

(23)년 월 일	(24) 이 력	(25) 년 월 일	(26) 이 력

(27) 공 적 사 항

--

[별지 제8호서식] 의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의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 표창 후보자

성명		직위(급)	
소속(주소)		연락처	

<개인정보 제공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남동구의회 의장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공적조서 작성, 공적사실 확인, 포상대장 관리, 구청장표창계획상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등 표창 추천 및 기록에 관한 사항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주요학력 및 경력, 과거 표창기록,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포상대장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소속 또는 주소, 직위 또는 직급)는 영구 보유
- 부서별 표창추천서류에 기록되는 개인정보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지방세 납부 여부>

남동구의회 의장표창 계획에 따라 표창대상자의 지방세 성실납부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표창 추천일 현재 체납액이 있을 경우 의장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를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 예

□ 아니오

위 본인은 표창과 관련하여 민원이 야기되거나, 남동구의회 의장표창 계획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지방세 납부사실이 거짓으로 확인되어 남동구의회 의장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피추천인 성명)

(서명)

남동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공적심사 의결서

공적심사 의결서

구 분	주소 또는 소속	직 위	성 명	담당업무내용
표창대상자 인적사항				
의결주문				
이 유				
	위와 같이 의결함 년 월 일 남동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위 원			

[별지 제10호서식] 표창대장

표 창 대 장

[illegible]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 해당 조례는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및 「남동구의회 표창 규정」과 관련된 표창 규정을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되지 않음.

작성자 : 남동구의회사무국장 채 의 용

[참고자료]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8장 포상

제48조(포상시행) 의회는 의회와 지역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에 대하여 포상을 시행할 수 있다.

제49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및 감사패, 공로패, 기념패,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0조(포상대상) 포상은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1. 표창장

가. 지역사회발전 또는 구민의 복리증진이나 주민화합에 기여한 경우

나. 의정활동에 적극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다. 사회도의와 미풍양속 실천에 솔선수범한 경우

2. 감사장 및 감사패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협조·지원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성을 떨친 경우 <개정 2019. 7. 12.>

3. 공로패

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의회운영 및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4. 기념패

가. 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시 그 활동 및 업적을 기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의장 또는 의원 등이 의회를 대표하여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을 방문하는 경우

5. 상장

가. 학술·예술·체육·그 밖의 각종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나.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다. 각종 품평회·경진대회·전시회 등에 입상한 경우

제51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① 포상은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에 의하여 수여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할 때에는 상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수여할 수 있다.

1. 수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

2. 각종 의정행사의 초청

3. 그 밖에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2조(포상권자) 포상은 의장이 행한다. 다만, 기념패는 “의원일동” 명의로 수여할

수 있다.

제53조(포상시기) 포상은 포상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제54조(대상자 추천) ① 포상대상자의 추천권자는 단체장 및 기관장, 또는 구의원,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추천서,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수여 예정일 10일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제55조(공적심사) ① 포상은 의회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50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표상대상자를 결정하는데 있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56조(의회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에 의회공적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과 의사담당이 된다.(개정 2018. 12. 21.)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담당이 된다.(개정 2018. 12. 21.)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 12. 21.)

제57조(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58조(수상자 명부) ① 포상수상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상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포상의 발급번호는 포상 종류의 구분 없이 일련번호를 매긴다.

제5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1)

남동구 표창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에서 행하는 표창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구정의 발전과 복지사회 건설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자와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공무원,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9. 6. 28.)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9. 6. 28.)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의한 표창권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9. 6. 28.)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남동구(이하 "구"로 한다)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개정 2019. 6. 28.)
3.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드높임 및 구민화합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일부개정 2020.9.25.)

4. 국민운동 또는 대민봉사활동에 헌신한 자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19. 6. 28.)

1. 구정발전과 지역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4. 국민운동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9. 6. 28.)

1. 각종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은 별지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
② 전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상금, 상패, 기념휘장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 할 수 있다.

제9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각급 기관장 또는 실·과·소·동장은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구민으로부터 공무원에 대한 표창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각급 기관장 또는 실·과·소·동장은 그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그 공적이 현저하여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추서)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 할 수 있다.

제11조(공적심사) ① 표창은 공적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6. 28.)

② 제6조에 의한 표창자의 결정에 있어 특별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2조(공적심의회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공적심의회는 구소속 공무원중에서 표창권자가 위촉하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6. 28.)

② 삭제 (2019. 6. 28.)

③ 공적심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그 소속 공무원중에 임명한다.

제13조(표창의 시기) ①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표창은 표창권자가 따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개정 2019. 6. 28.)

제14조(표창통제) 표창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표창과 공무원의 표창은 총무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제15조(이중표창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다. (개정 2019. 6. 28.)

제16조(표창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별지 제5호서식의 표창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남동구의회 표창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동구의회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2조(표창대상) 표창은 의회활동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이 큰 공무원,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기관 및 단체에 행한다.

제3조(표창의 종류) 표창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9. 6. 28.>

제4조(표창방법과 부상) ① 표창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표창은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제5조(표창권자) 표창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6조(표창시기)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제7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9. 6. 28.>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의회운영에 헌신한 공이 있는 경우
3.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공이 있는 경우

제8조(감사장) 감사장(패)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9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10조(대상자 추천) ① 표창대상자의 추천은 의원, 사무국장 및 구청장등 각급 기관장이 한다. <개정 2019. 6. 28.>

② 제1항의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추천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표창수여 예정일 10일 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제11조(의회공적심사위원회)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에 의회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사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의정담당이 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공적심사) 표창중 표창장은 구청장 등 각급 기관장이 추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조서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이중표창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4조(표창대장) 표창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서식의 표창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1-16호

남동구의회 표창 규정 폐지규정안

『남동구의회 표창 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월 29일

남동구의회의장

1. 제안이유

- 남동구의회 표창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의 내용과 중복되는 남동구의회 표창 규정을 폐지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화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 남동구의회 표창규정 폐지

3. 입법예고 기간 : 2021. 1. 29. ~ 2. 3.(5일간)

4. 의견제출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동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팀)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151,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의회 표창 규정 폐지규정안

의안 번호	2421
----------	------

발의년월일 : 2021년 1월 29일
 발 의 자 : 강경숙 의원
 찬 성 자 : 신동섭 의원 외 4명

☐ 제안이유

- 남동구의회 표창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의 내용과 중복되는 남동구의회 표창 규정을 폐지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화와 신뢰도를 높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남동구의회 표창규정 폐지

☐ 본 문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참고자료

- 「남동구의회 표창 조례」(안)

남동구 규칙 제 호

남동구의회 표창 규정 폐지규정안

남동구의회 표창 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 해당 표창 규정은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8장 포상」 및 「남동구의 회 표창 규정」을 「남동구의회 표창 조례안」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폐지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추가비용이 발생되지 않음.

작성자 : 남동구의회사무국장 채 의 용

(참고자료)

남동구의회의 표창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의회의(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표창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의회활동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이 큰 공무원,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기관 및 단체에 수여한다.

제3조(표창의 종류) 표창은 표창장, 감사장 및 감사패, 공로패, 기념패, 상장으로 구분한다.

제4조(표창권자) 표창은 남동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다만, 기념패는 “의원일동” 명의로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의정활동에 적극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3.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공이 있는 경우

제6조(감사장 및 감사패) 감사장 및 감사패는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협조·지원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성을 떨친 경우에 수여한다.

제7조(공로패) 공로패는 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의회운영 및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수여한다.

제8조(기념패) 기념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시 그 활동 및 업적을 기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의원이 의회를 대표하여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을 방문하는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9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학술·예술·체육·그 밖의 각종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2.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3. 각종 품평회·경진대회·전시회 등에 입상한 경우

제10조(표창방법 및 특전) ① 표창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에 의하여 수여한다.

② 제1항의 표창을 할 때에는 상패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표창의 시기) 표창은 표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제12조(대상자 추천) ① 표창대상자의 추천권자는 단체장 및 기관장, 또는 구의원,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표창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추천서,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의장표창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표창수여 예정일 10일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제13조(의회공적심사위원회)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에 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의회사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홍보담당이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공적심사) ① 표창 중 표창장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구청장 등 각급 기관장이 추천한 경우와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표창대상자를 결정하는데 있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5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2년 이내의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6조(표창대장) ① 표창수상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표창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표창의 발급번호는 표창 종류의 구분 없이 일련번호를 매긴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48조부터 제58조까지를 삭제한다.

②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의 별지 제4호서식부터 제12호서식까지 삭제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1-17호

남동구 관광진흥 조례안

「남동구 관광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월 29일

남동구의회의장

1. 제안이유

- 남동구의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관광안내소의 설치 및 운영의 효율적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 관광객 유치 등의 지원 및 지급제외 (안 제4조, 제5조)
- 관광취약계층의 지원 (안 제7조)
-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 (안 제8조)
- 관광진흥 업무의 위탁 (안 제9조)
- 관광모니터 구성 및 운영 (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1. 1. 29. ~ 2. 4.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관광진흥 조례안 (이유경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422
----------	------

제출년월일 : 2021년 1월 29일

발 의 자 : 이유경·민창기 의원

찬 성 자 : 신동섭 의원 외 2명

☐ 제안이유

- 남동구의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관광안내소의 설치 및 운영의 효율적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 관광객 유치 등의 지원 및 지급제외 (안 제4조, 제5조)
- 관광취약계층의 지원 (안 제7조)
-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 (안 제8조)
- 관광진흥 업무의 위탁 (안 제9조)
- 관광모니터 구성 및 운영 (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없음”

☐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9조
- 「관광진흥법」 제1조, 제47조의4, 제48조, 제76조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

남

남동구 관광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관광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이란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내방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숙박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 소재 업소 등을 말한다.
 - 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소
 - 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한 숙박업소
 - 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여행업자”란 법에 따라 여행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관광사업자”란 관광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법에 따라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관광객 유치 등의 지원)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판매한 여행업자
2. 구 관광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시책 추진에 현저한 공헌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 지원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급제외)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연수, 체육대회 등에 참가하는 사람으로서 항공료, 체제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 받는 경우
2. 정치 및 종교행사, 학술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3. 관광일정을 구에 사전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구의 관광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제6조(관광홍보 기념품 제공) 구청장은 구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홍보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국내·외 관광설명회 참석자
2. 구의 관광지가 포함된 관광 상품을 구매하여 방문하는 관광객
3. 구청장(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시행하는 축제 및 이벤트 등 관광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관광취약계층의 지원) 구청장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관광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에 따라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관광코스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
2.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활동 지원
3. 민관 협력을 통한 관광취약계층 여행지원 및 기구 설치·운영
4.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5.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온·오프라인 관광정보 제공 서비스
6. 사회적 인식 및 관광서비스 개선 교육, 세미나, 전문 인력 양성
7.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남동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안내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관광안내 및 홍보
2.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지역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사업

제9조(관광진흥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관광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객의 유치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3. 안내소 등 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
4. 관광인력 교육, 양성 및 운영
5. 관광기념품 및 관광사진 공모전
6.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위탁사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위탁받은 자가 위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관광모니터) 구청장은 질 높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지
역 및 관광시설에 대한 개선사항이나 불편사항 등을 제안·제보 및 건의하는
관광모니터를 운영 할 수 있다.

제11조(구성 및 운영) ① 관광모니터는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관광모니터는 성별을 고려하여 20명 내외로 구성하되, 관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관광모니터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표 1명과 총무 1명을 둘 수
있으며, 대표는 관광모니터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대표가 지명하는 사람
으로 한다.

④ 관광모니터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⑤ 구청장은 관광모니터가 원활하게 제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분증을 발
급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관광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
촉 할 수 있다.

1. 질병으로 인하여 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다른 시·군·구 또는 외국으로 이사한 때
3. 관광모니터의 제보실적이 저조한 때
4. 관광모니터로서 품의를 손상시킨 때

제12조(임무) 관광모니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서 추진하는 관광 관련 시책에 관한 주민 여론 제보
2.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제안·건의

3.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의 발굴 및 제보
4. 관광시설 이용 등에 대한 불편사항 제보
5. 기타 구에서 추진하는 축제 등 각종행사 여론수렴 제보

제13조(보상금) 제안·제보한 실적이 있는 모니터에게 그 내용의 효용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관광 홍보 기념품 제공(조례안 제6조)
→ 관광기념품제작 1식 × 10,000천원 = 10,000천원
- 관광모니터 운영(조례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 관광모니터 운영 1식 × 2,000천원 = 2,000천원

구분	소요비용	비고
○ 모니터 소모품 구입비	500천원	명찰 등 구입비
○ 모니터 활동 보상금	1,500천원	활동내역에 따른 차등지급

※ 관광안내소 운영(조례안 제8조)은 남동구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자원봉사자로 운영 → 비용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작성자 : 자치행정국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관광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7조의4(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제 관광의 촉진과 국민 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을 심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광홍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자등에게 해외관광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관광 홍보물의 제작, 관광안내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개

정 2008. 2. 29.>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광사업자 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광지·관광단지의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관광시설 등 관광자원을 안내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屋外廣告物)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6. 2. 3.>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유희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제76조(재정지원)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관광취약계층의 범위) 법 제47조의5제1항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 11. 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다.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관광 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본조신설 2014. 11. 28.]
- [종전 제41조의3은 제41조의7로 이동 <2014. 11. 28.>]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21-11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21. 2. 16.
3. 처분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21. 1. 28. ~ 2021. 2. 15. (19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 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비고 (말소예정일)
일반음식점	1998-0199396	전주콩나물 해장국별미네	장O진	인주대로 822 (구월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9. 9. 27.	2021. 2. 15.

6. 고지사항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2021. 2. 15.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 ☎ (032)453-2626

2021월 1월 28일

남 동 구 보 건 소 장

공 고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 2021-12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공고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동법 제37조(영업허가 등)를 위반한 아래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명령서를 송달 하였으나, 폐문 등으로 당사자에게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의거 행정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공고
2. 공고기간 : 2021. 2. 3. ~ 2021. 2. 17. (15일간)
3. 당 사 자

연번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 재 지	비고
1	유통전문판매업	2015-0199095	송두리유통	송**	배려터로 18(수산동)	-

4. 처분내용 : 영업소 폐쇄
5. 처 분 일 : 2021. 1. 5.
6. 처분사유 : 영업시설물 전부 멸실
7.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8. 고지사항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결청인 인천광역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 제기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9.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남동구보건소 식품위생과 유통식품팀

☎ 032-453-2755

2021년 2월 3일

남 동 구 보 건 소 장